

2017 대선 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

위험사회에서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로

일시 | 2017년 4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주관 |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준), 민주노총

주최 |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슴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두레생협,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이쿱생협, 안전사회 시민연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일과건강,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후원 | 경향신문사, 매일노동뉴스, 한겨레신문, 팩트TV(토론회 생중계)

2017 대선 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

위험사회에서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로

일시 | 2017년 4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주관 |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준), 민주노총

주최 |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슴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두레생협,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이쿱생협, 안전사회 시민연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일과건강,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후원 | 경향신문사, 매일노동뉴스, 한겨레신문, 팩트TV(토론회 생중계)

프로그램

[1부 사전행사 | 10:00 ~ 10:30]

진행	김 우 (416 연대 상임위원)
공동주최 단위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 4.16연대
대표 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반올림 민주노총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준)

[2부 토론회 | 10:30 ~ 12:30]

좌장	박종운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장)
10:30발제1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우선 10대 과제’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10:45발제2	‘영역별 안전과제’ 산업재해 안전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 공공교통 안전 (공공교통네트워크 나상윤 정책위원장) 생활안전_GMO (유경순 두레생협연합조합원교육활동센터 사무국장) 탈핵안전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화학사고 안전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피해자 권리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11:30토론	각 대선 후보 캠프 정책담당자
12:00 종합토론	플로어 토론
12:30 낭독	안전사회를 위한 기본 원칙

목차

인사글	4
416연대 / 반올림 / 민주노총 /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발제문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우선 10대 과제]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14
[영역별 안전과제]	
산업재해 안전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	36
공공교통 안전 (공공교통네트워크 나상윤 정책위원장)	51
생활안전GMO (유경순 두레생협연합조합원교육활동센터 사무국장)	62
탈핵안전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75
화학사고 안전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80
피해자 권리 (강찬호 가슴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88
토론편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광주 광산구을)	9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문재인 후보 법률특보단장/서울은평갑, 법제사법위원회)	101
민중연합당 이상규 전 국회의원 (김선동 후보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114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24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심상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보건복지위)	125
안전과제 요구	
생명 · 안전사회 기본 원칙	132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위험사회 구조개혁	134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세월호는 인양되었지만 아직 아홉분의 미수습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세월호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며, 다시는 이런 참사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겠지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책임과 폭력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국가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고, 작년 5월 구의역에서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정권의 안보와 기업의 이윤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기업과 정부 때문입니다. 그래서 4.16연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요한 법안으로 제정연대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랍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촛불광장'의 맨 앞에서 박근혜퇴진을 외쳤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박근혜탄핵 사유에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 인용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 사회의 안전은 더 잘 지켜지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탄핵사유에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 인용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생명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질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광장의 민심을 대변하겠다고 이야기하며 나선 대통령 후보들은 과연 생명 안전에 대해서 책임있게 말하고 있습니까? 국가와 기업에 의해 사람들이 함부로 죽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촛불민심을 대

변하겠다고 한 대통령 후보들은 무엇이 생명안전을 지키는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토론회에서 더 많이 듣고 대안을 만들기를 요청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생명권 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정치권에 우리의 생명을 의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웠던 것처럼, 세월호의 진상규명도 더 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안전한 사회도 누군가에 기대지 않고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고 지킬 것입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정책을 요구하는 자리이자 우리 스스로가 생명안전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안전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4월 13일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안방의 세월호' 사건으로 불립니다. 두 사건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위험사회가 아닌 안전사회를 원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침몰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안방에서 화학물질 테러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풀어야 할 대한민국의 숙제는 많습니다. 통일도 해야 하고, 경제적 불평등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전제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즉 생명권과 안전권의 기초 위에서 진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고 안전한 나라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대선과 '옥시불매시즌2'를 통해 우리 사회에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함께 공유합니다.

〈우리들의 요구〉

1. 정부와 가해기업은 책임을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라.
2. 정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 상한없는 징벌제, 중대 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하라.
3.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설치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하라.
4.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참사진상규명본부를 설치하라.
5. 정부는 피해자 판정기준 및 판정작업을 서둘러 진행하라.
6. 정부는 환경의학에 기반한 국가독성센터를 설치하라.
7. 정부와 가해기업은 피해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지원에 나서라.

8. 정부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판매허가제를 도입하라.
9.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대응기구를 설치해 이 문제를 끝까지 책임져라.
10. 가해기업들은 피해배상 수준을 넘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찾기 등 피해대책을 마련해 공개하라.
11. 정부와 가해기업은 가슴기살균제 참사 추모(기억)사업을 추진하라.
12. 공정거래위는 옥시 등 가해기업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철수시켜라.

2017년 4월 13일
가슴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삼성직업병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라며 거리에 나선 지 두 번째 맞는 봄, “더 이상 죽이지 마라” 피해자들의 외침을 삼성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병든 노동자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투명하고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과하다’고 보는 삼성과 ‘떼 쓴다’고 보는 친삼성 언론, 또 이에 동조하고 나선 이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는 요구가 당연한 현실이 될까요.

이번 주말, 삼성 서초사옥이 있는 강남역 8번 출구 앞 반올림 농성장에 겨우내 쌓인 먼지를 청소하며 답답한 현실까지 털어지길 바랐습니다.

안전 교육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서도 삼성이 말하는 깨끗한 사업장, 안전 최고의 기업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아도 일해야 했고, 여전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삼성반도체와 LCD에서 일하다 각종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렸다고 반올림에 제보한 230명(그 중 79명 사망)은 우리가 접한 비극의 일부일 것입니다. 내가 쓰는 화학약품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도, 마스크를 써도 화학약품 냄새가 코 끝에 맴돌아도, 나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요구할 수 없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증언입니다.

노동자들의 안전보다는 이윤을 앞세우고, 안전관리와 직업병을 없애려는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거짓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삼성에 맞서 반올림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10년, 돌이켜보면 기업과 정부의 태도는 큰 변화 없지만, 다행히도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목소리가 이렇게나 커졌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 있는 4월엔 이 목소리가 더욱 울려 퍼질 것입니다.

“노동자고 시민도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함께 외칩시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2017년 4월 13일

반올림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로 나아갑시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20대 대통령 선거

그러나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현실은 여전하고, 오늘도 7명의 노동자 가족은 국화꽃이 가득한 장례식장에서 분노와 절망의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조차 되지 못한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사태, 가슴기 살균제 참사까지 계속된 시민재해는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이게 나라냐? 라는 깊은 절망과 더할 수 없는 분노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구의역 참사를 비롯 각종 참사 때 앞 다투어 찾아왔던 정치인, 중대 사고마다 머리를 조아린 대기업 총수, 정부 책임자들은 대 언론 퍼포먼스에만 골몰했을 뿐입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은 가장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국정 농단의 공범인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이 적용되는 평등한 일터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 고용과 인력충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안전이 구조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규제완화를 철폐하고, 통제와 전시행정의 안전이 아니라,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생명안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던 단체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공허한 메아리만 되돌아 왔을 뿐입니다.

이재용이 구속되고 박근혜 없는 봄을 맞이했지만, 1,700만 촛불 시민혁명으로 맞이한 20대 대선에서도 생명안전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 안전한

사회는 구호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깊은 실망을 감출 수 없지만, 오늘의 토론 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안전정책이 세워지고 주요 공약으로 배치되며, 이후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후에도 민주노총은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해 노동자, 시민이 함께 싸우는 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17년 4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당과 정치인이 해야 하는 일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큰 사명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취임식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이 위협받는 사회, 국가는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세월호는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세월호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가슴기 살균제 피해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고, 건(축)물 붕괴 사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열아홉 살 노동자가 죽어간 구의역 사건, 고교졸업반 실습생의 자살 사건, 이런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유전자가 조작된 종자를 들여와 먹거리를 생산하고, 원전은 가동중단 명령을 받고도 재가동하고 있고, 지진대비책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전철과 버스, 대중교통 사고 소식도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책임을 정치에게 물을 수는 없지만 정치가 가장 큰 책임주체인 것은 맞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세워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개선책을 내어놓아야 할 책임이 정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것이지요.

촛불집회가 일어나고 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소홀히 한 때문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다짐을 수백 번도 더 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 위험사회로부터 안전한 사회로’가 그 다짐의 요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거 중에서도 가장 큰 선거인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저마다 외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그 다짐을 구체적으로 실천 할 수 있는 방안이 모든 약속에 담겨있기를, 모든 정치의 기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법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담겠다는 약속을, 수백 개의 시민, 노동, 환경 단체가 제안하는 10대 과제는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모든 정당이, 정치인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해주시기를, 그래서 모든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약속과 실천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참여해주신 분들, 이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13일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준) 준비위원장 송경용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우선 10대 과제

강문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위한 우선 10대 과제

10대 우선 과제	세부내용
시민·노동자의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	- 헌법에 생명·안전권 명시 - 국민안전 기본법 제정
생명·안전 관리 국가 조직체계 개혁 및 시민·노동자 참여구조 마련	- 생명·안전 국가 컨트롤 타워 체계 구축 - 시민·노동자 참여 보장 및 거버넌스 구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기업 자체, 기업 경영자, 정부 책임자 처벌 및 처벌수준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안전규제 완화 중단 및 적폐청산	- 안전규제완화 원상회복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혁
생명·안전 관리 감독강화 및 안정된 일자리 확보	- 기업의 법 위반 관리 감독 강화 인력 확충 - 생명·안전 업무 인력 확대 및 정규직 직접고용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 위험업무와 시민안전 업무의 외주화 금지 - 하청 산재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지진위험 지역 원전중단 및 탈핵 에너지 전환	- 지진위험 지역 원전 중단 -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원전 정책 폐기 - 탈핵 에너지 전환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	- 철도, 지하철 2인 승무 의무화 - 노후 대중교통 시설 교체 주기 의무화 - 정시 운행에서 안전운행으로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과 독성 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 금지	- 화학물질, GMO(유전자 변형식품) 완전 표시제 -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 유통 중단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 피해자 집단 소송제 도입

안전한 나라만들기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 선정

1. 시민·노동자의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

- 헌법에 생명·안전권 명시
- 국민안전 기본법 제정

가. 실태

-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각종 재해로 사망하거나 다치고 있음. 최근에 벌어진 재생명안전사회의 기본원칙해만 해도,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가슴기 살균제 참사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지진과 원전에 의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위험사회이고 그로 인한 국민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현행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반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률로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임. 이 법률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와 과태료 부과, 재난관리 의무위반 등에 대한 징계 등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법률에는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정부의 책임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이나 이념이 천명되어 있지는 않음.
- 사회적 가치로서 ‘생명존중과 안전’이 정부 정책과정, 기업 활동 및 산업전반, 시민생활 속에 변화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본적 원칙, 이념과 정책방향, 책무 등을 명시한 기본 법률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음.

나. 세부 과제

(1) 헌법에 생명·안전권 명시

- 현 헌법과 법률에는 ‘생명·안전권’이 없음. 단지 헌법 제34조 제6항에 재해 예방과 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노력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음.
- 현행 헌법 상으로는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의 환경권이 국민의 생명·안전권에 대한 토대가 될 수 있음.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안전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거나 그럴 위험이 큰 현재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성이 있음. 즉, 재해에 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넘어서 국민의 안전권이 분명하게 규정될 필요성이 있음.

(2) 국민안전기본법 제정

○ 안전을 국민의 권리로서 법률에 명시

- 안전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국민의 권리로서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국민의 권리, 피해자의 권리 명시

○ 안전관련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 필요

-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본적 원칙, 이념과 정책방향, 책무 등을 명시한 기본법 필요
-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비한 안전에 대한 단계적 구현을 위한 모범 마련

○ 안전의 책임과 원칙 명문화

- 사고 발생 시 국가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명 구조 최우선 의무를 명시
- 정부, 고용한 기업, 공공의 책무
- 알권리, 사전예방, 시민참여 원칙
- 민관 조사위원회 구성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재난관리 중심의 현 기본법을 ‘안전’ 중심으로 대체 필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 중심이며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개별 집행법’ 성격이 강해 기본법으로 위상 미흡
- 기본법 기능이 미비하여 새로운 안전관리 영역이 제기될 때 새 법률을 입법하는 양상이 반복되어 법체계적 대응이 지연되고 안전관련법체계 통일성 약화
- 혼재된 안전관련법령의 정비와 체계화, 효율화

○ 법령에 ‘안전’개념 법정화 필요

- 현 안전 관련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 ‘안전관리’ 등의 개념 정의는 있으나 ‘안전’에 대한 개념 정리 없음

○ 안전기준의 설정 및 적정성 유지를 명시함으로써 지속적 노력과 개선 근거 필요

2. 생명·안전 관리 국가 조직체계 개혁 및 시민·노동자 참여구조 마련

- 생명·안전 관리 국가 컨트롤 타워 체계 구축
- 시민·노동자 참여 보장 및 거버넌스 구축

가. 실태

- 한국의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주로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 중심으로 편중되어 왔음. 세월호 참사와 연이은 메르스 사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재난대응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었음.
-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으나, 외교안보에 대한 청와대의 통제와 재난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통제 등 재해 통제에 대한 이원시스템 및 국민안전처에 소방과 해경 등이 혼재되어 있는 조직적 특성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처가 종합적인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큼. 그리고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에도 정부는 안전을 기업의 사업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시민 참여 없는 국가 안전 대진단 등 전시 행정을 반복하였으며, 시민안전에 대한 시민참여를 보장하지 않았음.
- 2013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그 위원회 활동으로 시민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아테네의 교통관리본부 이사회에 노동이사 참여, 뉴욕의 광역 교통기구 이사회에 노조, 시민 참여 제도화 등 선진외국의 안전 거버넌스 구축은 다양한 사례가 있음.

나. 생명·안전 국가 컨트롤 타워 체계 구축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재난 현장과 가까운 지방자치 단체와 지역의 구조 세력의 역할과 권한이 중요함.

- 중앙정부와 지역 단체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재난 관리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 뒤 그 기관을 중심으로 통합된 재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국민안전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정비를 하거나 아예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다. 시민·노동자 참여 보장 및 거버넌스 구축

- 현 관주도의 일방적 거버넌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지역안전관리 시스템에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 지자체별 안전위원회, 안전 감시단 관련 조례 제정과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
- 화학물질 및 사고에 대해 지역주민의 알 권리, 참여권 보장
- 철도, 지하철, 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 안전에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 제도화
-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사고조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하청 노동자 참여 보장, 중소기업사업장 안전관리 위한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혁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기업 자체, 기업 경영책임자, 정부 책임자 처벌 및 처벌 수준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가. 실태

- 세월호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음.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임.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도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음.
-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슴기살균제 참사에서도,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고,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음.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 벌금만이 선고되었음.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되지 않았음.
-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임.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음.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임. 아르고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음.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음.
-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한계와 안전관련 법령의 한계로 기업과 정부의 구조적인 책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고, 이는 반복적인 발생의 가장 큰 원인임.
- 중대사고 발생 때 마다 여야 및 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한국의 기업 살인법 제정을 촉구한바 있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조차 입법 추진을 검토 한 바 있으나, 사장되고 있음.

- 2003년 캐나다, 호주, 2008년 영국은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 법인과 정부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었음. 영국은 기업 살인법 제정 이후 1명의 산재사망에 대해 7억의 벌금을 부과했고, 2011년에는 6억 9천만 원을 부과함. 영국은 세계에서 산재사망 발생이 가장 낮은 국가임.

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모든 재해에 적용되고 있고, 그 적용기준이 엄밀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점들은 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을 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그 적용대상자도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바, 그런 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의 ‘기업살인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 그 법안에는, 기업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기업경영책임자와 정부의 책임자 처벌이 강화 되도록 하는 내용,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

(1)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 현행 법체계에서는 기업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재해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안전조치 위반 내지 과실이 인정되는 개인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기업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가능함. 현재 대법원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음¹⁾. 따라서 법인 내지 기업은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
- 그 경우에도 기업은 벌금형으로 처벌될 뿐이며, 벌금의 액수 또한 매우 낮은 수준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월호를 운행한 청해진해운이 벌금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것 및 6명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폭발 사고를 일으킨 한화케미칼이 벌금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 그 단적인 예임.
- 그런데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부과해 왔고 얼마 전부터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였음. 프랑스에서도 신형법에 기업을

1) 대법원 1984.10.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도3876 등.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음. 최근에는 독일의 Nordrhein-Westfalen주에서도 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²⁾ 이런 점에 비추어 오면, 우리 법률상으로도 법인을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대검찰청은 지난 2014. 11. 3. 법무부에 기업 경영진이 관리하는 주요 사업이 대형 인명사고 피해를 초래했을 경우 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안전사고 관련 법령 검토 결과'를 법무부에 제출했음.

-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 벌금액의 액수가 문제될 수 있음. 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의 매출액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 천 만원 정도의 현행 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으로는 실효성 있는 처벌을 행할 수 없음. 이에 벌금액을 기업의 매출액에 연동하여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현재 과징금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연동시키는 규정이 우리 법률에 마련되어 있고³⁾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범죄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기업의 규모에 따라 벌금형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기업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보장하는 방안

- 기업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현재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가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임. 최고 경영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뭄. 현재 최고 경영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로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시 대표자가 처벌받은 것,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청해진 해운의 대표자가 처벌받은 것 등이 있음.
- 현재 처벌의 수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는지는 검찰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음. 그에 따라 검찰은 사고의 크기와 여론의 동향을 보고 자의적으로 처벌의 수위를 정하고 있음. 이렇게 해서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에게 위하적 효과가 있기 어려움.

2) 김유근, '법인의 형사책임', 제5회 형사사법포럼, 57면.

3)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2015. 01. 01 시행).

- 따라서 재해 발생시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호주 수도준주 ‘기업살인법’에는, ① 노동자가 노동 중 혹은 노동과 관련된 활동 중에 ② 사용자의 행위(작위 혹은 부작위)를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③ 사용자가 노동자의 사망 혹은 중상해 가능성에 대하여 무모 혹은 무지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형법상 책임이 발생하고, 회사의 이사회, 고위 경영진이 고의적으로, 알면서, 무모하게 가해행위에 관련되거나 그러한 행위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허락한 경우 및 회사의 사내문화가 관련된 법규 등을 위반하여 사업장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를 지배하는 특정인의 고의가 없더라도 회사 전체의 행위태양을 보고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상급자의 위법, senior officer offense). 이러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개인에 대하여는 2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00 달러 이하의 벌금(병과가능)이, 회사에 대하여는 최대 1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직접적인 형사처벌과는 구분되지만, 독일의 질서위반법 제130조에는 기업의 소유자 또는 그와 동등하게 취급되는 대표사원이 기업체 내부의 위반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조치들을 고의나 과실로 조치하지 않았고 이상의 감독이 있었다면 그러한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업체의 의무 위반 행위가 형벌의 제재를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나 대표사원은 100만 유로⁴⁾ 이하의 질서위반금에 처해지고 그 의무 위반 행위가 질서위반금의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질서위반금의 액수에 해당하는 질서위반금에 처해진다.
- 우리도 이러한 입법례를 참조하여, 기업의 고위경영진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는 행위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는 기업의 고위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일반적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만드는 것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함.

(3) 정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보장하는 방안

- 기업이 일으키는 대형사고의 경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책임이 적지 않음. 그런데도 현행법상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 매우 드물. 세월호 침몰사고와

4) 2016. 5. 현재 약 13억 3천만원

관련해서도 구조 지체에 책임이 있는 해경 외에 선박의 안전 부실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음.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교량 공사 감독 공무원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했었음.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검찰은 “대형 사고 때 1차 책임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는데(한겨레 2014. 5. 13.자 기사 참조),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나온 것은 하나도 없음. 이제는 이에 관한 내용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4)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가슴기 살균제 재해와 관련하여 기업에 막중한 배상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제조물책임법에 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음.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케 하는 제도를 말함.
- 이미 우리나라의 법제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한적으로나마 도입되어 있었음.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그것임. 그에 더해 최근에 제조물책임법에도 도입이 된 것임.
- 이런 점 및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그리고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행정조치로 그러한 위험이 적절히 예방되기 어려운 점,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수의 기업의 지배구조가 민주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점, 이미 몇 개의 법률에 제한적이거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4. 안전규제 완화 중단 및 적폐 청산

- 안전규제 완화 원상회복
- 규제개혁 위원회 개혁

가. 실태

- 박근혜 정부는 “규제는 암 덩어리” 라고 외치며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를 남발하였음. 그에 따라 각종 안전규제도 완화해 왔음. 이 문제를 결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기업편향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민간위원은 전경련, 경총 등 사업주 단체로만 구성되어 있음.
- 세월호 침몰 원인중의 하나로 노후 선박의 선령 규제완화가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도 철도,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비롯하여 노후원전, 노후 화학산업단지 등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규제완화가 현재도 진행형임. 더욱이 규제 일몰제, 규제 총량제 등으로 그런 경향을 가속화하고 있음.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장, 가스, 위험물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사고예방 대책을 무력화 하고 있음.
- 현재 국회에 입법안이 계류 중인 이른바 <규제 프리존 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 대상으로 78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 입증 등을 기업에 맡기고 있어 제2의 가슴기 살균제 참사를 불러 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임.

나. 안전 규제 완화 원상 회복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중 안전을 위협하는 조항의 폐기
- 규제 프리존법의 폐기

- 내구연한 폐지 및 완화 등 각종 안전규제완화 원상회복
- 안전관련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규제 일몰제, 규제 총량제” 적용 배제

다. 규제개혁위원회 개혁

- 안전규제 완화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의 중립화 및 공익화

5. 생명·안전 분야 관리 감독강화 및 안정된 일자리 확보

- 기업의 법 위반 관리 감독 강화 인력 확충
- 생명·안전 업무 인력 확대 및 정규직 직접 고용

가. 실태

- 한국의 사업장 숫자는 180만개이지만 노동부 산업안전 감독관은 330여명으로 감독관 1명이 약 5만여 명의 노동자와 5,672개 사업장을 담당해야 함. 이는 근로감독관의 담당 업무의 3배 이상임. 산업안전 사업장 감독 실시율은 전체 사업장의 1% 내외에 그치고 있음. 매년 노동부 감독 대상 사업장의 90%가 법 위반이 적발되는 현실에서 안전감독이 방치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사업장 뿐 아니라 전 산업의 안전에 걸쳐 있음.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015년에도 20조 3,955억이며, 2001년에서 2015년까지 241조 1,239억이었음. 이는 2,500만원 연봉 노동자 964만 4천명의 고용이 가능함 금액임.
- 기업에게는 각 분야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나, 전체 사업장을 대비하여 보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0.5%,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는 0.3%에 그치고 있음. 더욱이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도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월 1회 방문하는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또한, 현재의 선임기준은 10,00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도 2명에 그치고 그마저도 하청 노동자 숫자는 포함되지 않음. 소수로서나마 선임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도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어 사업장 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독립적인 권한도 없어서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보다 심각한 문제는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인력의 부족으로 대표적으로 소방관의 인력과 지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규제완화로 노후화된 버스, 지하철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외주화가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비 보수 인력 감축으로 설비 보수 주기도 늘어나고 있음.
- 안전 업무 자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비정규직이 많아 그 자체로 안전 위협 요소가 되고 있음.

나. 기업의 법 위반 관리 감독 강화 인력 확충

- 산업안전감독관을 비롯한 각종 생명·안전 관련 관리 감독 인력 확충
- 안전검사, 인증, 감독 등의 민간 위탁 대행 금지와 공공성 확보
- 기업의 안전관리 보건관리의 위탁대행 금지와 독립성 및 권한 확대

다. 생명·안전 업무 인력 확충 및 정규직 직접고용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 기업의 각 분야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확대
- 시민안전 직결되는 공공부분의 안전인력 확충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공공부문 안전인력의 정규직 직접 고용
-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제한

6.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 위험업무, 시민안전 업무 외주화 금지
-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및 처벌 강화

가. 실태

- 재벌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은 32.2%로 전체 기업 평균인 10.7%의 3배 이상 정도 높음.
- 산업안전공단의 연구에서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이유로 “유해위험 업무이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40%로 1위였음. 재벌 대기업은 위험의 외주화로 산재예방, 보상, 처벌의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있으며, 수백억 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고 있음. 2016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30대 기업의 산재사망의 95%가 하청 노동자임.
- 공공부문의 외주화도 심각함. 철도 지하철의 선로보수, 신호, 소방화재 등과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취급 등 위험업무가 외주화 되었음. 원전 산재사망은 100% 하청 노동자임.
- 서울 메트로는 스크린 도어 등의 관리 업무를 외주화하였음. 그로 인해 구의역 19살 김군을 비롯하여 3명의 노동자가 반복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같은 업무를 정규직이 담당하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사망사고는 없었음.
- 지난 5년 간 한국전력에서 710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였음. 동일 업무의 한전 정규직에 대해서는 안전장구 비용이 1년에 79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사 1건당 1만 7천원이 전부임

나. 위험 업무, 시민안전 업무 외주화 금지

- 중국은 2014년 안전생산법 개정으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도급을 금지하고 있음.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건설업에서도 30%에서 70%까지 원청이 직접 고용 시공하는 <직접시공제>를 도입하고 있음.
- 위험한 업무,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해야 함.

다. 하청 산재 원청 책임 강화

- 하도급이 진행되는 사업장은 시설, 공정, 노동시간을 원청이 통제하고 있음. 하청은 규모도 작고, 안전조치에 대한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
- 사실상 인력 파견과 동일한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해야 함.
-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인원 대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교육 직접 실시,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원청의 사고 예방 책임이 강화되어야 함.
- 아울러 사고 발생시 원청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함
-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하도급 사업주에 일정 비율의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하고 낙찰률에서 적용제외 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

7. 지진 위험 지역의 원전 중단 및 탈핵 에너지 전환

- 지진 위험 지역 원전 중단
-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원전 정책 폐기
- 탈핵 에너지 전환

- 현재 한국에는 2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으로 전 세계 1위의 원전 밀집국가의 오명을 갖고 있음.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사고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해결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미래로 떠넘기는 일임. 또한 삼척과 영덕에서는 원전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투표결과 85%, 91.7%의 주민들이 원전 건설에 반대함.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신규 원전을 건설, 계획하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 지역은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지진발생 위험지대임이 밝혀짐. 최근의 경주지진이 이를 드러내 주고 있음. 이미 경주에는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 월성 1호기를 비롯한 나머지 원전들의 안전성,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인근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
- 위험사회에서 벗어나려면 지진위험지대에 건설 허가된 신 고리 5,6호기를 포함해 삼척, 영덕, 울진에 건설예정인 모든 원전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함. 그리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조속히 폐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함

8. 대중 교통 안전성 강화

- 철도, 지하철 2인 승무 의무화
- 노후 대중교통 시설 교체주기 의무화
- 정시 운행에서 안전운행으로

- 서울 지하철은 인구밀도 세계 216개 도시 중 20위의 대규모 도시이고, 하루 7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임. 지하철은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기관사 1명이(1-4호선, 서울 메트로만 2인 승무) 승객 수천 명을 책임지는 구조로 상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음. 역무인력의 최소화로 위험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로 192명의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지하철 기관사 10명이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음. 대구참사도 2인 승무였다면 다른 대응이 가능했고 많은 승객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될 수 있었을 것임.
- 지난해 발생한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도 2인 승무였다면 대응방식이 달라졌을 것이고,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임. 서울시는 계속되는 지하철 기관사 자살을 막기 위해 여러 대안과 연구를 통해 2인 승무 기준을 만들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대책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문제의 심각성은 전국의 철도, 지하철의 상당수가 1인 승무를 시행하고 있고, 경전철등 무인역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임.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으로 철도 지하철이 운행되기 위해서 2인 승무제도가 법제화(철도 안전법) 되어야 함.
- 전동차의 통상적인 내구연한은 15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1996년 제정된 도시철도법에서는 차량의 내구연한 (수명)을 25년으로 규정했었음. 2009년에는 내구연한은 25년으로 규정하되 정밀진단을 받아 15년의 범위에서 정기적인 진단을 전제로 연장 가능하게 함. 2014년 철도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용 내구연한을 삭제하고, 도시철도법에서도 삭제함. 전국의 철도, 지하철의 노후차량 실태는 심각한 상황임. 열차의 노후화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 보수 주기를 더욱 늘리고, 이를 빌미로 인력을 감축했음. 이러한 노후 차량과 정비 보수 주기 완

화 및 인력 감축은 버스 등 대중교통의 전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철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사고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는 <정시운행>만을 맹목적으로 중시하는 규정과 지침임. 적정 인력을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노동과 심야운행이 진행되고, 정시운행이 강제되면서 빈번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9.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과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 유통금지

- 화학물질.GMO(유전자 변형 식품) 완전 표시제
- 독성 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유통금지

가. 위험 요인들에 대한 성역 없는 정보공개

- 구미 불산 누출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한국사회는 ‘비밀은 위험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음. 기업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위험을 숨겨왔고 정부는 이를 방치해왔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험을 바로잡는 출발은 국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널리 활용케 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보가 성역 없이 공개되어야 함.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는 노동자와 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공개되어야 함.
- 또한 미래의 재앙이 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정보 역시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져야 함. 국민의 안전에 관련한 정보에 성역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정보는 행동을 위한 것이어야 함. 국민은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과 가족과 동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논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업과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위험을 방치하는 대상에 대해 정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하여 화학물질 등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는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고 알기 쉬운 형태로 가공되어 전달되어야 함.

나. 독성 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의 금지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어떤 독성물질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음. 많은 소비자들이 기침이 심해지고 피부가 이상해진다는 호소를 기업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그들은 안전을 의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압박질렀음. 결국 규모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함.
- 2013년에 정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제정하면서 마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음.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려 한다며 시행

령과 시행규칙을 완화하라고 명령함. 기업은 가슴기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게 로비하여 화평법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음.

- 그러나 검찰조사와 국회의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음. 독성을 확인하지 않은 성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 살생물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물론 모든 산업용제품에 까지 이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노동자와 주민과 소비자 모두 안전한 나라가 되어야 함.

다.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현과 방사능·GMO 없는 안전급식

- GMO 상용화가 추진된 지 20년이 된 한국은 가장 많은 식용GMO를 수입하는 주요 수입국임. 현재 우울증, 자폐증, ADHD, 암 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GMO는 아이를 비롯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옥수수, 면화, 유채 등 대부분 식용 GMO는 식용유, 장류, 과당 등으로 제조되고 사료로 쓰이고 있음. 현행 불완전한 GMO 표시제로 인하여 GMO 원료로 만들었지만 가공이후 DNA 또는 단백질이 발견되지 않으면 GMO로 표시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결과, GMO 원료 수입은 많은데 주변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GMO 원료기반에 의한 가공품의 GMO완전표시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 GMO 벼 등 시험재배도 즉각 중단되어야 함. 또한 우선적으로 성장기 아이들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하여 학교급식에서 방사능과 GMO 식재료를 퇴출시켜 안전한 학교급식을 추진하여야 함.

10.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 피해자 집단 소송제 도입
- 피해자의 사고조사 참여권 보장. 피해자 존중

- 가슴기 살균제 참사는 2017년 2월말 5,463명의 피해 접수를 했고, 잠재적 피해규모가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참사였음에도 피해구제는 더디고, 제한적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음.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도 여러 제약으로 과실치사상과 표시광고 위반으로 징역7년이 전부인 상황임. 강력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는 한 제2, 제3의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함. 이윤 추구로 소비자나 작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중대한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벌제를 통해 재발방지 효과를 갖도록 해야 함.
- 아울러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시, 대표소송으로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함. 대표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 부담을 덜고, 피해자의 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당행위를 제재할 수 있어야 함. 피해자의 권리 강화는 시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은 기업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에서 시작 됨.
- 피해자는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중대재해의 원인제공자가 정부와 기업일 경우, 피해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관을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며, 모든 정보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 피해자는 충분히 존중받고 위로받을 권리가 있음. 언론은 원인과 재발방지에 대한 심층적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발언이나 상처를 주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위로, 그리고 희생자가 있을 경우 충분히 추모하며, 기억하고 기록해야 함. 중대재해로 피해를 당하거나, 희생자가 생기는 경우 어떤 배·보상으로든 그 회복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배·보상은 피해자가 온전하게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고, 공동체도 그 상처를 치유할 때까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함.

[산업재해 안전]

죽고 다치고 골병드는 전쟁 같은 일터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나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1. 박근혜가 퇴진하면 나의 삶은 나아질까요?

-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경남 창원에서 열린 촛불집회 연단에 24세 청년이 올라왔다. 청년은 전기공 노동자였다. 자신의 전공을 살리려고 월 120만원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다니던 직장에서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 그러나,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노동청, 노동위원회를 찾아갔지만 노동부는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결국 해고를 당했다. 다른 직장을 구해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그 청년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물었다. “박근혜가 퇴진하면 이런 나의 삶이 나아질 기회가 올까요. 정말 이대로 20년, 30년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다.
- 매년 2,400명이 죽고, 해고의 위협을 무릅쓰고 산재를 신청해 인정받은 노동자만 9만 명이다. 수많은 산재는 은폐되어 통계조차 없다. 부천 현장에서 20대 청년노동자 6명이 메탄을 중독으로 실명과 뇌손상을 입고, 구의역 에서 19살 김 군이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조선소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간다. 10 만 원짜리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아서 용광로에 빠져 죽는 사고가 3번 연거푸 일어나는 현장. 감정노동으로 자살하는 현장. 자신이 어떤 화학물질을 다루는지도 모르고 일하다가 혈액 암에 걸리고, 병원에서 야간 교대 근무를 하다가 유방암에 걸리는 현장. 이것이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2. 적폐중의 적폐. OECD 산재사망 1위 산재공화국

1) 지난 15년간 산재사망 노동자는 3만5천 968명. 산재는 136만 3천 293명

- 해마다 2,4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지난 15년 동안 일터에서 죽음의 행진 지속
- 2015년 산재사망 2,066명. 정부 산재통계 9만 909명
-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사망. 3시간 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현실
- 산재은폐의 심각성으로 실질 산재는 정부 통계의 12배에서 30배에 달함

2) 지난 15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241조 1,239억

- 2017년 정부 총예산 400조의 60%가 산재로 손실
- 2,500만원 연봉 노동자 964만명 고용 가능 금액
- 매년 15조 7천 694억. 2015년에는 20조3천955억

노동부 산재통계 자료 취합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인용 분석)

년도	산재(명) ①	산재사망(명)②	경제적 손실액 (단위, 억)	기준변경 통계③	사망통계 차이④
2015	90,129	2,066	203,955	1,810	-256
2014	90,909	2,134	196,327	1,850	-284
2013	91,824	2,233	189,771	1,929	-304
2012	92,256	2,165	192,564	1,864	-301
2011	93,292	2,114	181,269	1,860	-254
2010	98,645	2,200	176,186	1,931	-269
2009	97,821	2,181	173,157	1,916	-265
2008	95,806	2,422	171,094	2,146	-276
2007	90,147	2,406	162,113	2,159	-247
2006	89,910	2,453	158,188	2,238	-215
2005	85,411	2,493	151,288	2,282	-211
2004	88,874	2,825	142,995	2,586	-239
2003	94,924	2,923	124,090	2,701	-222
2002	81,911	2,605	101,016	2,605	
2001	81,434	2,748	87,226	2,748	
합계	1,363,293	35,968	2,411,239	*노동부는 2002년 이전 통계분류 없어 조정 못함	
평균	90,866	2,398	160,749		

① 산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통계.

② 산재사망: 근로복지공단 산재사망 통계 (2012년 변경 전 통계 기준 적용)

③ 노동부 통계 변경 : 2012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에 10년 치 통계 변경 발표

④ 노동부 통계 변경 기준에 따른 산재사망 통계 차이

3) 한국 산재사망의 특성

(1) 동일 유형, 동일 사업장의 반복적 산재사망

-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수리 정비 하청 노동자 사망 : 2013년, 2015년, 2016년
- 안전펜스 없어 용광로 빠져 사망 : 2010년, 2012년, 2015년
- 현대중공업 매년 10명, 13명 산재사망 반복 : 현대건설, 대우건설, GS 건설

(2) 후진국 형 사망사고 반복

- 산재사망의 60% 이상이 추락 사망

(3) 하청.파견,건설일용... 비정규 노동자와 중소영세 사업장 취약계층 산재사망 집중

- 건설노동자 매년 600여명 사망반복. 영국 건설업의 11배. 미국의 6배. 일본의 3배
- 주요 대기업, 공공부문 산재사망 80%~100% 하청 비정규 노동자
- 산업재해의 80%이상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

3. 안전한 일터와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과제

1) 세부 과제

- 노동자의 안전은 시민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상당부분이 시민안전 직결 사업장임. 이에 민주노총은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같이 과제로 제출하고 있음 .

[안전한 일터]

- 중대재해 기업 처벌 특별법 제정
- 위협의 외주화 금지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인정기준 확대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 시민의 생명안전 직결 업무 외주화 중단 및 인력 확충
- 공공안전 대책 수립
-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2) 입법 정책대안

과제	입법, 정책 대안
중대재해 기업 처벌 강화	-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
위험의 위주화 금지 및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 위험업무, 생명안전업무 도급, 재하도급 금지 - 생명안전 업무 기간제, 파견고용 금지 입법 -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 - 상시근로자 기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하청 노동자 참여 확보 - 원 하청 합산재해 도입 - 하도급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폐지 및 전면 적용 - 특수고용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감정노동 보호입법 - 산재은폐 근절. 병원 신고제도 도입
모든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및 인정기준 강화	-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 해외파견 노동자, 소규모 건설공사 산재보험 적용 - 산재보상 입증책임 전환 및 심사승인제도 개선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인력확충	- 생명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 시민안전 직결 업무 인력 확충
공공안전 대책 수립	- 교통 : 철도, 지하철 내구연한, 1인 승무제 폐지, 육상과적 화주 책임 도로법 개정 - 산업단지 : 노후원전 폐쇄, 노후산단 전면 재보수 및 보수주기 도입. 산업단지 안전관리 법제화 - 메르스 등 감염성 질환 : 공공의료체계 확립 및 병원인력 확보 - 규제완화 철폐 및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폐기 - 공공안전에 노동자·시민 참여 구조 보장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 안전·보건 관련 각종 전문가 선임 확대 -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공시 제도 도입

4. 안전한 일터를 위한 과제

1) 중대재해 기업처벌 특별법 제정

- 2001년~2014년까지 정부 통계로만 1백 27만 3천 164명이 산재를 당함. 산재사

망은 3만 3천 902명임. 정부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20조 7,721억 원에 달함. 2006년도 총사고 1,300만 건 중 1위는 산업재해로 약 1,300만 건임. 은폐된 산재까지 감안한다면 정부 통계의 13배~30배에 달함.

-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사고에 대해 기업에 대한 처벌은 고작 벌금 2,000만원으로 노동자 1명 사망에 벌금 50만원 꼴임.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은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남. 기업의 최고 책임자 처벌은 없이 말단 관리자 처벌만 이어지고 있음.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참사도 오세훈 전(前)서울시장의 부실시공과 공기업 외주화 남발이 주요한 원인이었으나, 책임자 처벌은 없이 하급관리자만 처벌됨. 메르스 확산의 주요 기업인 삼성병원의 경우 최소한의 처벌도 진행되지 않았고, 가슴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에도 기업의 최고 책임자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 판결이 남발되는 등 시민참사에 대해서도 ‘숨방망이 처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세월호 참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민참사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의 최고 책임자 처벌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여 산재사망과 시민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고, 특히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재해에 대해 원청 기업에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음. 기업의 조직적인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것만이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에 대한 강력한 예방대책이라 할 수 있음.

2)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 하청 산재에 대한 정부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의 40%가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발생하고, 주요 30개 기업의 산재사망의 85%가 하청 산재임.
- 2016년 발생한 20대 청년노동자 메탄올 중독사고는 삼성, LG의 3차 하청업체의 불법파견 고용노동자였으며, 광주 남영전구 수은중독은 4차에 걸친 다단계 하청에서 발생했음. 구의역 참사, 남양주 사고, 고려아연, 한국석유공사, 현대중공업, 삼성 전자 에어컨 설치기사 노동자 사망 등 하청 노동자 사망이 줄을 잇고 있음.
- 재벌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은 32%로 전체 기업 평균의 3배임. 원청 기업이 하도급을 주는 첫 번째 이유로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을 40%가 지목하였음. 재벌

대기업은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 하여 산재예방, 보상, 처벌에서 빠져 나가고 있으며, 산재보험료 할인은 매년 수백억 원씩 받고 있음. 30대 재벌이 최근 3년간 받은 산재보험 할인액은 1조 3,796억임.

- 철도, 지하철의 선로 수리 정비 업무, 원전의 방사선 취급업무, 노후화된 화학산단의 정비 보수 업무, 병원의 외주화 남발 등으로 각종 시민재해가 급증하고 있음. 공공안전 분야의 외주화는 지진 등과 같은 재난참사의 위험 경보 시스템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하청 노동자의 안전은 물론 재난참사에 대한 긴급 대응조차도 취약한 상태임.
- 상시적인 고용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직접 정규직 고용이 원칙임. 특히 시민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금지하고, 직접 정규직 고용을 강제해야 함.
-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하청 산재가 다발하고 있으나, 현행의 원청 책임은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안전교육 장소 지원, 합동 점검 등으로 제한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특히, 사업장의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안전교육, 안전보건조치 등을 원청의 직접 책임으로 강제해야 하며, 하청 노동자도 산재예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권리를 보장해야 함.
- 또한 하청 산재를 원청에 합산하여 재해 통계를 생산하고, 하청의 도급 금액에 안전보건관리비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기업이 안전보건에 대한 인력과 투자를 공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함.

3)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종과 규모에 따른 적용제외를 남발하고 있음. 업종이 통째로 적용제외 규정이 많은 분야는 중앙정부, 지자체 등 각종 공무원과 지자체 청소, 도로보수원 등 공공행정 분야, 학교를 비롯한 교육서비스업, 원자력 안전법, 광산, 선박 등의 업종과 사무직 노동자등임. 안전보건 관리 체계뿐 아니라, 안전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도 적용제외가 많음.

- 산재의 80% 이상이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120억 건설공사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조차 제외되어 있음. 5인 미만 사업장은 각종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음.
- 사무직, 서비스직 노동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과 고객폭행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남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법을 수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일터 괴롭힘을 비롯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이 전혀 없어, 사무, 서비스직 노동자의 주요 산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자체가 부실함.
- 사무 서비스직 노동자를 비롯해 고객 대면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감정노동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고객의 폭행 폭언으로 인한 자살, 공황장애, 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기업은 고객감동을 기치로 내걸면서, 사업장에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성과평가에 반영시키려고 있어, 부당한 고객의 요구에도 노동자들은 인격적 모독을 감수하고 있음. 이미 유럽에서는 사업장내의 폭력에 대해서는 고객으로 인한 폭언 폭력을 포함하여 엄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 고발권을 강제하고, 다양한 예방보호를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으로 대두된 감정노동에 대해 한국은 여전히 사업주의 예방보호의무 법제화를 외면하고 있음
- 건설기계, 화물, 쿼리 서비스 등 위험 업종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있음. 영국, 독일 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특수고용 노동자도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럽 대다수 국가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업종과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전면 적용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제외 남발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고 조차 공무원, 사학연금 사업장은 이행되지 않고 있어, 공무원, 지자체, 학교, 병원 등은 산재예방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 한국의 산재은폐는 정부 공식 통계의 13배에서 30배에 달하고 있음 이에 대한 처벌도 미약함. 이에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발생에도 119를 회피하고 지정병원으로 옮기면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사업주의 산재은폐 종용과 강요로 산재은폐가 횡행하고 있음. 산재은폐를 근절하는 근본 대책으로는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병원 신고 제도를 한국적 방식으로 도입해야 함.

4)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인정기준 확대

-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임. 그러나 한국의 산재보험은 특수고용, 해외파견, 소규모 건설공사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전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특수고용 노동자는 특고 산재특례와 중소기업주 특례의 2가지 형태로 적용되고 있으나, 특고산재 특례는 노동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적용제외신청 제도>가 있어, 대상 노동자의 9%만이 적용되고 있음. 건설기계, 화물 등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주 특례는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임의가입 제도로, 대상 노동자의 0.1%도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 되고 있음. 외국의 산재보험 제도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고 있음.
- 해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는 출장으로 처리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는 해외파견으로 되어,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해야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중동,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등 의료체계가 취약하고, 각종 위험으로 사고와 직업병이 다발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가입하는 민간보험에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함.
- ILO 가입국가의 3분의 2 국가에 적용되는 출퇴근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청소노동자, 건설노동자, 산림감시 노동자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적용배제 되어 왔음.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노동부와 새누리당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전면 적용법안을 파견법 확대등 노동개혁 법안과 연계하여 통과여부를 주장해 왔으며, 현재 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은 <과실에 따른 차등 보상, 단계적 적용>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출퇴근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도록 입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새누리당 제출 법안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출퇴근 산재보험이 전면적용 되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함.
-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와 자살이 최고인 한국이지만 이에 대한 직업병 인정기준은 지극히 높거나 적용제외 되어 있음. 또한, 2013년 직업병 인정기준이 개정되었으나, 이는 30년 만에 개정된 것임. 외국의 경우에는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에 대

한 별도 구조를 갖고 정기적인 개정 작업을 하고 있으나, 한국은 정기적인 심의구조도 없음.

- 한국의 직업병 인정률은 지극히 낮음. 직업성 암과 뇌심혈관계 질환은 30%대의 인정률에 불과함. 이는 직업병에 대한 노동자 접근성이 낮고, 직업병 산재에 대해 노동자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심사승인체계에 있음. 산재신청을 가로막으면서 산재신청을 위한 각종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직업병 불승인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음. 입증책임이 전환되어야 함.
- 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상황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함. 기업은 노동자에게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영업비밀> 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위험을 숨기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업장이 안전보건 자료 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관련 정보는 정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며,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 거부는 최소화하도록 제도화 하며, 노동자 및 퇴직자와 유족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법제화 하여야 함.

5)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및 시민안전 직결 업무 인력 확충

- 위험의 외주화는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주요한 원인임. 구의역 참사는 공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로 비롯되었으며, 철도, 지하철의 무분별한 외주화는 각종 철도, 지하철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 구의역 참사 이후 서울 지하철은 7개 업무를 무기 계약직 형태로 직접 고용하였으나, 여전히 외주화 업무는 남아 있으며, 전국의 철도, 지하철의 외주화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인천공항도 외주화가 심각하여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보안, 소방, 시설유지·보수 등 전 분야에서 외주화 비정규직 고용이 남발되고 있으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안전에 대한 권한은 제약되어 있음
- 2015년 메르스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8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격리자는 18,752명에 달함. 메르스 확진 및 사망자 중 21%가 병원 종사 노동자임. 특수고용인 간병 노동자, 이송요원, 구급차 안전요원 등 하청 노동자가 다수임. 병원의 무분별한 외주화는 메르스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었음.

- 2016 국정감사에 의하면 원전, 발전 등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도 외주화 하청 노동의 비율이 많고, 사망사고의 80%~100%가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정보 전달체계에서 조차 제외되어 있음.
- 생명안전 업무의 외주화는 비용의 효율성만을 내세우고 있어, 인력 고용을 최소화하고 있음. 적정 안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쳐 나는 안전 매뉴얼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음.
- 국내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의 대부분이 1인 승무제를 시행하고 있음.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도 개선 대책으로 제시되었던 1인승무제 폐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무인역사 등이 확대되고 있음. 또한, 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버스의 경우에도 정비 인력을 지속 축소되고 있음. 가스의 경우에도 정비 주기를 단축하고 있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교통 : 철도, 지하철 내구연한, 1인 승무제 폐지, 육상과적 화주 책임 도로법 개정
- 산업단지 : 노후원전 폐쇄, 노후산단 전면 재 보수및 주기 도입. 산업단지 안전관리 법제화
- 메르스 등 감염성 질환 : 공공의료체계 확립 및 병원인력 확보
- 규제완화 철폐 및 기업규제완화 특조법 폐기
- 공공안전에 노동자. 시민 참여 구조 보장

- 메르스 사태 발생으로 병원의 적정인력이 보장되지 않는 실태는 외주화와 더불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임.

6) 공공안전 대책 수립

○ 대중교통

- 세월호 침몰 원인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선박의 문제임. 그러나, 이는 선박뿐만 아니라, 철도, 지하철, 항공, 버스등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 대중교통 분야의 운송수단 및 설비에 대한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설비 보수를 강화하여야 함.

- 교통사고중 화물차 사고는 연 평균 1,300명에 달함. 화물사고의 상당수는 과적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이며, 과적으로 인한 교량피해도 연간 300억원이 소요됨. 과적의 원인은 화주의 강요와 저가 운임에 있음. 과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물노동자의 노동3권보장과 더불어 화주에게 과적 책임을 묻도록 도로법 개정이 필요함.

○ 산업단지

- 주요 국가산업단지는 1960-1970년대 조성되어 노후화 실태가 심각함. 울산등 노후 화학산단에서 폭발 화재사고가 빈발해서, 대형사고에 대한 잠재 위험이 높음. 특히, 2016년 지진 발생으로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나, 울산 경상권에 원전과 화학산단이 있어 지역주민의 위험과 불안을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지진, 원전, 화학산단 모두 근본 예방대책이 아니라 대피 훈련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 무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음. 그러나, 기업은 오히려 설비 보수 주기를 늘리고 예산 투자를 감축하고 있음
- 노후 원전 및 폐쇄 및 노후 산단에 대한 전면 재보수 주기가 규정화 되어야 함. 또한, 위험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개별 사업장뿐 아니라, 산업단지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규정하는 법률과 정책이 개선되어야 함.

○ 메르스등 감염성 질환

- 신종플루, 메르스등 신종 감염성 질환은 계속 다양화 되고, 예방대책도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메르스 사태는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공공의료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인식을 확산시킴
-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공공의료체계의 확충과 병원의적정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병원인력이 제정 되어야 함.

○ 규제완화

- 과적, 선령완화 등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규제완화 뿐 아니라 판교 붕괴, 노후 철도 지하철 등 반복적인 재난참사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규제완화임. 이명박 정권에서 더욱 가속화 되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규제는 암 덩어리> 라며 무차별적인 규제완화가 진행되어 왔음.

-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은 사업장 안전, 보건, 가스, 위험물 관리 등 각종 안전관련 규제완화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사업장의 각종 안전보건관리를 위탁 대행으로 넘기게 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공동화 시키고 붕괴시키고 있음.
-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검토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규제완화가 중단 및 원상회복되어야 하며, <기업규제완화 특별 조치법>은 폐기되어야 함.

○ 노동자, 시민 참여

-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은 국민 안전처를 신설하였으나, 종합적인 안전대책은 없이 안전을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각종 통제만 강화하고 시민안전에 대한 시민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 2013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2조의2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 가능함.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의 공공기관의 장과 지역의 유지들로 채워져 있음.
- 공공 교통, 화학사고, 지역안전등 공공안전에 노동자, 시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무엇보다 각종위험은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므로,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중소기업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개혁을 통해 사업장 안전을 통한 지역안전 강화를 보장하여야 함.

7)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 안전보건 전문가 선임 확대

- 매년 2,400명이 사망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각종 사업주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선임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사업장 자체가 제한적임. 선임의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위반 시 처벌도 미약함.

- 2013년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사업장 숫자는 3,676,876개이고, 종사자는 19,173,474명임. 그러나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9,391개 사업장으로 0.5%에 불과함.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4,080개 사업장으로 0.3%에 불과함.
- 노동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50인 이상 사업장 36,760개 중 업종별 적용제외가 많아, 안전 관리자는 52%, 보건관리자는 38%만 선임 대상임.

[2013 전국 사업체 조사 보고서 기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비율]

구분	전체 사업장	50인 이상	선임 대상	전체 사업장 대비 선임대상	50인 이상 사업장 대비 선임대상
안전관리자	3,676,876	44,819	19,391	0.5%	43%
보건관리자	3,676,878	44,819	14,080	0.3%	31%

- 또한 고용규모가 확대되어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추가 채용인원이 2명 이상으로만 되어 있고,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으로 채용한 관리자에 대해서도 겸직이 허용되고 있음. 1,000인 이상 사업장도 평균 안전관리자는 2.53명, 보건관리자는 2.44명이며, 전체 사업체당 평균 채용인원은 안전 관리자는 1.6명, 보건관리자는 1.5명에 불과함.
-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으로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위탁 대행이 가능하게 되어, 2014년 기준 선임 신고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는 76%, 보건관리자는 80%가 1개월에 1~2회 방문 점검하는 위탁대행으로 되고 있음. 300인 이상 사업장, 심지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위탁대행도 확대됨.
-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분야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유독물관리자, 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화약류 보관관리 책임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자, 전기 안전관리자 등임. 또한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으로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이 허용되는 범위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화약류 보관관리 책임자, 유독물관리자 등임.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도입 전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비교]

구분	특조법 개정 전	특조법 개정 후	증감
안전관리자	26,057	16,520	-9,537(-36.6%)
보건관리자	11,296	9,208	-2,088(-18.5%)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를 확대하고, 직접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 하고, 권한을 강화하여 사업장내의 일상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정부의 안전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권한 강화가 필요함.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은 330여명으로 1인당 5만여명의 노동자와 5,672개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실제 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은 전체 사업장의 1%내외만이 감독을 받고 있음. 매년 노동부 감독에서 90%이상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에서 1년에 99%의 사업장이 정부 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현실은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각종 안전규정을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키고 있음. 산업안전을 비롯한, 가스, 전기, 위험물 등 각종 안전점검, 인증 감독을 공공화 하고 정부 감독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함.

○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공시 제도

-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에서 직접 고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 분야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산재사망, 재난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 및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처벌 강화뿐 아니라, 기업이 안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강제하여야 함.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건설업에 적용되고 있음. 이 제도는 건설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책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채용 및 각종 안전보건 설비나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전 업종에 전면 적용하여, 기업이 매출의 일정 비율은 안전보건에 투자하도록 강제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하도급 금액에 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도록 하고, 낙찰률에서 배제하는 등 실질 금액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함.

-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용공시제도를 원용하여 기업이 안전보건 인력 보유, 투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를 간접 강제하도록 하여야 함.

[공공교통 안전]

공공교통(궤도·버스)의 안전위협요인과 개선방향 -노동조건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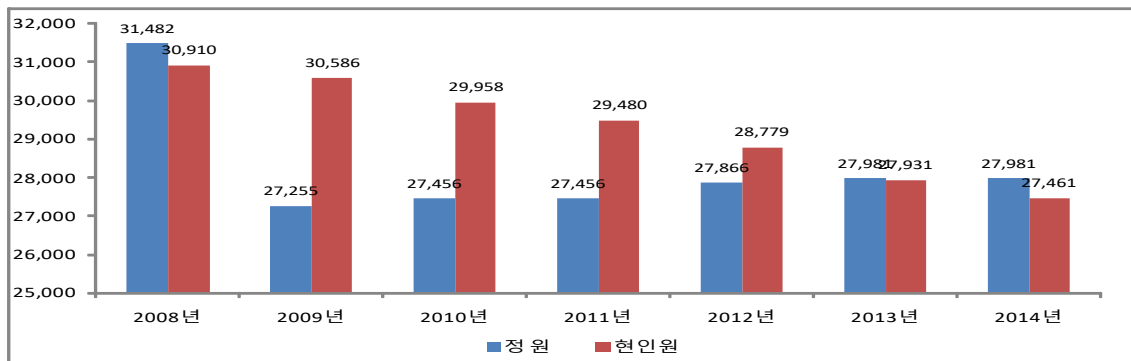
나상윤 /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1. 궤도교통의 안전위협요인과 개선방향

1) 인력감축과 외주화 확대

○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코레일은 2008년~2012년까지 5,115명(전체인력의 15%)의 정원 감축을 단행하는 철도선진화 계획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감축된 정원에 맞추기 위해서 외주화, 정비 축소, 검수주기 조정, 자연퇴직, 신규채용 억제 등으로 2008년~2012년까지 정원 3,616명, 현원 2,131명을 감축했다. KTX-2단계(동대구~부산) 개통, 경의선, 경춘선, 전라선 복선 전철화 등의 신규 사업이 발생하면서 인력수요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무리하게 인력이 감축된 것이다.

코레일의 연도별(2008년~2014년) 정·현원 변화



출처 : 코레일 홈페이지

○ 지하철도 철도의 상황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4년 현재 전국 7개 지하철 공사의 종사자수는 24,667명이고 노선길이는 562.6km 역수는 591개이다. 전체 수송량도 2,499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2006년부터 추세를 보면 수송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종사자수는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2014년에서야 다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이후로 노선과 역이 늘어났지만 계속해서 인력이 감축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하철도 철도와 마찬가지로 인력이 늘어나야 하는 요인이 늘어났음에도 철도와 마찬가지로 인력을 줄였다.

연도별 전국지하철공사 수송량과 종사자 현황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수송량(백만명)	2,080	2,141	2,273	2,410	2,499
종사자수	24,291	24,204	23,916	23,362	24,667

출처 : 통계청, 각 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자료

○ 코레일은 외주화도 점점 확대시키고 있다. 코레일은 계속해서 주변업무는 외주인원이 담당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작업계획은 정규직이 수행하면서 소수 핵심화를 추구하고 있다. 심지어 경영정상화라는 이유로 안전과 직결된 업무까지 무분별하게 외주화 되고 있다. 박수현 국회의원의 보도자료(2014. 10.21)에 따르면 코레일의 고속차량은 경정비 업무 일부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중정비 업무 일부도 신규로 외주정비를 하고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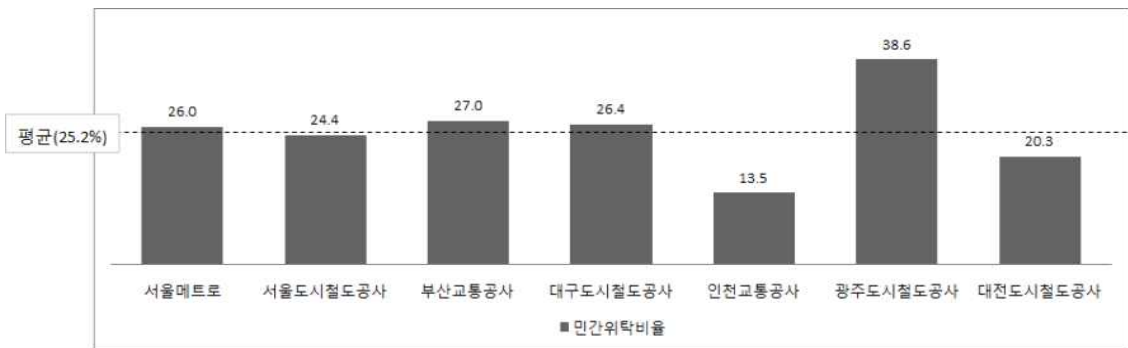
코레일의 외주화 인력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위탁인원(명)	3,929	4,002	4,035	4,009	4,242	4,782
위탁비율	12.5%	12.7%	12.6%	12.5%	13.2%	14.6%
위탁비(백만원)	119,244	127,800	129,576	138,364	152,098	176,118

출처 : 철도노조 자료

○ 현재 전국지하철의 민간위탁 비율은 전체적으로 25.2%이며 이중 인천지하철공사가 13.5%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광주도시철도공사가 38.6%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지하철 외주화비율도 낮지 않은데 인력감축과 더불어 이러한 외주화도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전국지하철 민간위탁 비율(%)



출처: 정홍준(2014) 재인용

2) 인프라 투자부족으로 인한 노후화

○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기대수명이 도래하는 코레일의 차량은 842량이나 된다. 철도구조물(교량, 터널) 중 50년 이상 된 노후구조물이 전체의 33%, 내구연한(15년)을 경과한 주요 신호설비도 약 46%에 달하고 있다. 선로, 전기, 신호 관련 유지 보수 시설물의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¹⁾ 시설교체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안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지하철도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서울메트로는 설립된 지 40년이 넘으면서 차량교체가 즉시 필요한 21~25년 된 차량이 41%(802량)나 된다. 부산교통공사도 전체 차량의 15%인 132량이 25년 이상이었고, 9.6%(84량)는 21~25년 된 차량이었다. 철도와 마찬가지로 신호시설이나 부품 등의 노후화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로 시행되다 보니 부품을 공급한 영세한 업체가 도산하게 되면 교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부품 조달제도가 최저가 낙찰제 중심으로 결정되다 보니 관련 설비를 제작할 때마다 상이한 업체들이 계약을 맺고, 납품된 제품 역시 기존 것과 달라서 운용 중 장애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이승우·이영수, 2014)

1) 철도 레일은 총 7,698km 중 레일마모기준치의 70%를 넘는 선로가 218km에 달했다. 신호제어 장비 중에서도 전원장치 44.7%, 신호기 43.1%, 선로전환기 40%, 연동장치 37.8%, 궤도회로장치 36.6%, 건널목 제어유니트 31.6%가 내용연수를 초과해서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철전력 장비 중에서도 노후율이 주변압기 33.0%, 원격소장치 31.9%, 전철주 20.8%, 전차선 17.6% 등이었다. 정보통신 장비 중에서는 영상감시설비 32.0%, 전송장치 20.0%, 자동화재탐지설비 14.7%가 노후되었다.(박수현 국회의원실의 보도자료, 2014. 10.21)

3) 1인 승무와 무인운영의 문제

- 현재 서울메트로와 철도공사 수도권전철을 제외한 도시철도가 1인 승무(일부는 무인운전)로 운행되고 있다. 1인 승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공황장애를 발생시켜 기관사의 자살을 초래하고 있으며, 1인 승무는 비상사태 시 대처가 어렵고, 대구지하철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1인 승무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이 요구된다.
- 민자 경전철을 중심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핵심 업무의 외주위탁, 무인운전/무인역사, 다기능화 등의 인력운영을 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처럼 無역장, 無역무실, 無매표소, 無현업사무소, 無숙직 5無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운영시스템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상시 대처에 취약하면서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지하철에서도 무인역사와 1인 근무가 늘어나면서 비상시 대처가 어렵게 되고 있다.
- 예를 들면 서울도시철도공사 역무직은 화재 발생 시 등 5분 안에 20가지 초동조치²⁾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야간에 157곳 중 32곳에서 혼자 야근을 실시하므로 비상 상황 시 대응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서울메트로는 8개 역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각종 사고와 운행 장애 등이 벌어질 경우, 관제센터-기관사-역무원 사이의 유기적 대응이 결여되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무인역사는 교통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이 늦어져서 위협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4) 처벌과 성과평가 위주의 안전관리체계

- 2015년 8월 13일에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했는데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정착이라는 명분으로 안전투자 공시제, 대형 철도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현재 1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강화 및 해당 공기업 사장 해임건의, 사

2) 상황 파악 및 현장 출동(양압식 공기호흡기 착용, 랜턴·휴대전화 소지)→정확한 화재발생 위치를 종합관제센터·119·112에 신고→환승역일 경우 해당 역에 통보→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승강장 화재로 소화전 이용 시 선로 단전 여부 확인)→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운행정지 상태 및 위치 확인(CCTV)→시민 유도 안내 및 구조조치(스크린도어 개방·파쇄 및 열차 출입문 비상코크 조치)→비상게이트 개방 및 게이트 비상모드 전환(개방)→터널 대피 시 대피 유도(이동식 피난계단 설치)→유도 안내(랜턴·발광유도봉 지참)→제연설비가동 확인 및 수막차단벽 가동(필요시)→시민 및 환승시민 역사 진입 통제→자체 안내방송 실시.

고경중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 분야에 반영, 안전관리 우수기관에 선로사용료 감경 등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인력감축과 점검 주기 연장으로 정비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토부 계획대로 처벌(penalty)과 성과 평가 위주로 안전관리가 진행된다면 현장 노동자들은 안전문제를 숨길 수밖에 없다.

- 현장의 작업조건이 개선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국토부와 코레일의 상의 하달방식 (톱다운) 명령을 따라야 하는 현장 노동자들은 당장 처벌과 성과 평가로 개인은 물론 조직에 까지 불이익이 미치는 사안을 일단은 모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처벌과 성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코레일 입장에서도 현장 노동자들의 그런 행동을 방조하거나 부추길 수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철도사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아차 사고나 운행 장애 등의 문제들은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지하철 또한 장애·사고 및 산업재해 건수가 낮아야 행자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장애·사고 및 산업재해 건수를 숨기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5) 개선방향

가. 정부의 궤도부문 투자 확대

- 철도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궤도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제도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그것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지원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궤도 운영기관 모두 노후시설 재투자는 물론 공익서비스 손실분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감축과 외주화 등의 상업적인 운영이 강제되고 있다. 이러한 상업적 운영은 안전투자 부재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재정투자는 재정낭비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확대해야 한다.

나. 현업인력 대폭적인 충원

- 현재 철도와 지하철은 신규노선과 유지보수시설물 등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인력충원이 되지는커녕 정원축소와 점검주기 연장 등의 방식으로 인력효율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인력증가 요인이 분명히 생겼음에도 인력이 늘어나지 않게 되면서 기

존 인력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 특히 현업 인력들의 부족으로 예방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아울러 철도와 지하철의 운행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승무원(기관사 포함)이 탑승해서 운행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다. 상시·안전업무 외주화 제한

- 안전 관련 업무 자체를 외주화 하고 철도운영 자등이 안전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 및 도시철도 안전관련 업무의 외주화를 제한하고, 해당 업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정규직화하도록 해야 한다. 무인 역사 운영을 금지하고 역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

라. 관료가 아닌 현업중심의 안전관리체제로 전환

- 처벌과 성과 평가 위주의 안전관리체제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현업에서 안전 관련 문제점들을 은폐하게 하면서 오히려 대형사고의 가능성을 축적시키게 되므로 폐지해야 한다. 안전관리는 단순히 중앙부처에서 처벌과 성과 평가 등의 방식으로 내리꽂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철도분할 민영화 폐기

- 국토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코레일로부터 유지보수업무 완전분리 및 철도관제권 회수, 철도차량 전문정비업을 신설방안 등은 안전을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분할민영화의 기반이 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분할 운영되고 있는 SRT도 통합해야 한다.

바. 인력확대와 직고용을 저해하는 총인건비제도와 경영평가제도 개선

- 예산과 정원 통제를 통해서 지자체와 공기업의 인력증원과 외주업무의 인소싱을 가로막고 있는 중앙정부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2. 버스교통의 안전위협요인과 개선방향

1) 버스업의 장시간 저임금 실태³⁾

- 한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노련)이 실시한 설문조사⁴⁾에 따르면 버스 노동자들의 월 근로일수는 20.3일,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1.6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4.3시간, 월 평균 노동시간은 235.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상용 근로자 월 평균 노동시간과 비교해보면 57.3시간 정도 일을 더하고 있었다.
- 업종별로 보면 시내버스는 각각 19.8일, 11.8시간, 53.8시간, 233.4시간 등이었다. 시외버스는 21.6일, 12시간, 60.1시간, 260.6시간 등이었으며, 농어촌버스는 21.1일, 12.6시간, 61.4시간, 266.3시간 등이었다. 고속버스는 20.5일, 10.3시간, 48.8시간, 211.8시간 등으로 조사되었다. 시내버스와 고속버스는 전체 평균 보다 월 평균 근로시간이 적었지만 시외버스와 농어촌 버스는 전체 평균보다 30시간 정도 많았다.

버스 업종별 노동자 근로시간 현황(2015년 9월 현재)

	전체	시내	시외	농어촌	고속
월 근로일수(일)	20.3	19.8	21.6	21.1	20.5
1일 평균 근로시간	11.6	11.8	12.0	12.6	10.3
주당 평균 근로시간	54.3	53.8	60.1	61.4	48.8
월 평균 근로시간	235.7	233.4	260.6	266.3	211.8

출처: 자노련(2015)

- 버스 업종별 월 평균임금을 보면 전체 평균은 314만원이며 시내버스가 323만원, 시외버스가 291만 원, 농어촌버스가 269만 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시내버스 중에서 준공영제 시행지역은 335만원이고 미 시행지역은 308만 원이었다. 시급별로 보면 전체 평균은 13,324원이며 시내버스 중에서 준공영제 시행지역이 15,751원으로

3) 정부의 공식통계가 없기 때문에 버스 노동자들을 다수 조직하고 있는 노조의 설문조사 자료를 인용하도록 한다.

4) 조사방법은 연맹간부들이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설문을 진행함. 조사방법은 업종별 시내와 시외버스는 조합원 대비 4%, 농어촌과 고속버스는 8%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음. 19개 지역과 업종 노조소속 92개 단위 사업장의 3,934명의 조합원에게 설문을 받았고 답변이 부족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892명의 표본수를 사용하였음. 표본수 2,892명은 2015년 현재 전체 조합원 81,295명 중 운전직 조합원(전세, 화물, 마을버스 제외) 70,474명의 약 4.1%에 해당하는 크기임.(자노련, 2015)

제일 높았고 준공영제 미 시행지역은 12,181원 이었다. 이 밖에 시외버스가 11,168원, 농어촌버스가 10,118원 등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 2015년 고용노동부의 상용 근로자 월 평균임금인 349만 원과 비교해보면 전체 버스업의 월 평균 임금은 90%수준이었다. 하지만 상용 근로자 월 평균임금의 시급(19,592원)과 비교해보면 68% 수준에 불과했다. 초과 노동으로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로 상용 근로자 월 평균임금의 시급과 비교하면 준공영제 시행지역은 80.3%, 준공영제 미 시행 시내버스 지역은 62%, 시외버스는 57%, 농어촌버스는 51.6% 등으로 조사되었다.

버스 업종별 월 평균임금(2015년 9월 현재)(단위 : 원)

구분	전체	시내			시외	농어촌
		시내버스전체	준공영제 시행	미시행 도 단위		
월 평균 임금(A)	3,140,462	3,233,658	3,353,505	3,084,363	2,910,326	2,694,627
월 평균 근로시간(B)	235.7	233.4	212.9	253.2	260.6	266.3
시급(A/B)	13,324원	13,854원	15,751원	12,181원	11,168원	10,118원

출처: 자노련(2015) 재수정

2) 장시간 노동의 원인과 교통사고 실태

- 버스업종에서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이유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버스업종의 일일 노동시간이 매우 길다. 세부업종과 운영체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기시간까지 포함하면 준공영제가 아닌 지역에서는 일일 일반적으로 16~19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9조5)에 명시된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로 운수업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두 번째는 버스 대당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연속 근무일수가 증가하면서 주간이나 월간 노동시간도 대단히 길어진다는 점이다. 2014년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그나마 대당 인원이 1.97명이지만 농어촌 버스는 1.33명, 시외버스 1.32명, 고속버스는 1.48명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버스업종에서 대당 2명에도 미치지 않는 운영을 하면서 교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연속근무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일당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운수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된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시간이 전반적으로 일상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시내버스는 격일제이지만 대당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원활한 교대가 되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3일 연속 근무할 때가 많다. 1일 19시간 근무를 3일 연속으로 일하면서 월 근로시간이 300시간 이상 넘어가는 것이다. 복격일제는 5일 연속으로 일할 수도 있다.

노선버스의 보유대수와 운전자 현황(2014년 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총계
보유대수		33,403	1,802	7,654	1,899	44,758
운전자수		65,958	2,393	10,247	2,821	81,419
대당인원		1.97	1.33	1.34	1.48	1.82
근로 형태	1일 2교대	39,971	-	16	-	39,987
	격일제	22,665	145	156	-	22,966
	복격일제	3,322	2,248	10,075	2,821	18,466

출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 세 번째는 빠듯한 배차시간으로 휴식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면서 실제 운행 시간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운행거리와 배차간격에 비해서 버스업체에서 차량대수를 부족하게 운영하기 때문이다. 차량대수가 부족해도 배차간격을 조정해서 휴식시간을 마련할 수 있지만 업체들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다. 빠듯한 배차시간으로 많은 버스 노동자들이 휴식과 점심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면서 노동강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 버스업종에서 만연한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졸음운전과 인지반응 저하는 물론 난폭운전과 신호위반까지 야기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 실제로 전체 버스업종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노동시간이 많은 경기도 시내버스의 교통사고 건수와 증가율이 월등히 높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천정배 국회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평균 2.8%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경기도는 3배나 높은 9.6%를 기록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경기도의 버스 대수가 전국적으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만큼 교통사고 비중도 높겠지만 증가율이 평균보다 3배 이상 높고 전국 최고라는 점은 충분히 장시간 노동과 교통사고의 관련성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시도별 시내버스 교통사고 발생추계(2008년~2014년)

시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증감률 (2008-2014)
합계	발생건수	5,442	6,003	6,132	6,003	6,226	6,390	6,415	2.8
	사망자수	135	147	140	105	110	105	125	-1.3
	부상자수	8,408	9,205	9,394	9,241	9,566	9,543	9,747	2.5
경기	발생건수	1,308	1,599	1,724	1,939	2,165	2,163	2,272	9.6
	사망자수	34	51	41	35	39	34	40	2.7
	부상자수	2,242	2,646	2,838	3,200	3,564	3,376	3,626	8.3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천정배 국회의원 보도자료(2015.10.5보도자료)

- 민간버스 기업들이 비용절감과 이윤추구 목적으로 적정한 인력과 차량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민간버스 기업들이 적절한 인력과 차량을 운영하도록 해야 하지만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력과 차량의 추가 투입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인력과 차량의 추가 투입관련한 적극적인 규제조치가 없다면 장시간 노동이라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적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3) 개선방향

가. 근로기준법 제59조 폐지 및 운전시간 규제 강화

- 운수업의 장시간 근무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토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2월 28일에 관련 규정을 공포했지만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1일, 1주일, 근무와 다음 근무 사이 등의 기간에 대한 운전시간, 휴식시간, 수면시간 관련한 세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버스안전운행계획을 골자로 하는 버스안전법 제정

- 비용을 줄이려는 민간버스기업을 규제하지 않으면 버스안전은 담보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버스업종별로 버스안전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인 대당 운전자 수, 노선별 탕수, 운영차량 수, 재정지원 수준 등의 ‘버스안전운행계획’을 골자로 하는 버

스안전법을 제정해야 한다.

다. 버스공영제 도입 확대

- 버스공영제는 소유와 운영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민간버스운영체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버스공영제 전환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노선권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면허권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야 하며 기준인건비제도 등도 개편되어야 한다.

라. 중앙정부의 버스재정 지원 확대

- 버스안전을 위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버스재정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참고문헌>

이승우·이영수(2014), 육상교통·물류분야의 안전위험요인과 개선방향 연구.

이영수(2016), 버스·화물 운전시간 규제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정홍준(2014), 서울시 지하철 외주용역과 시민안전, 지하철안전토론회 자료집.

한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2015). 『버스노동자의 근로실태 및 개선방향』

[생활안전 (G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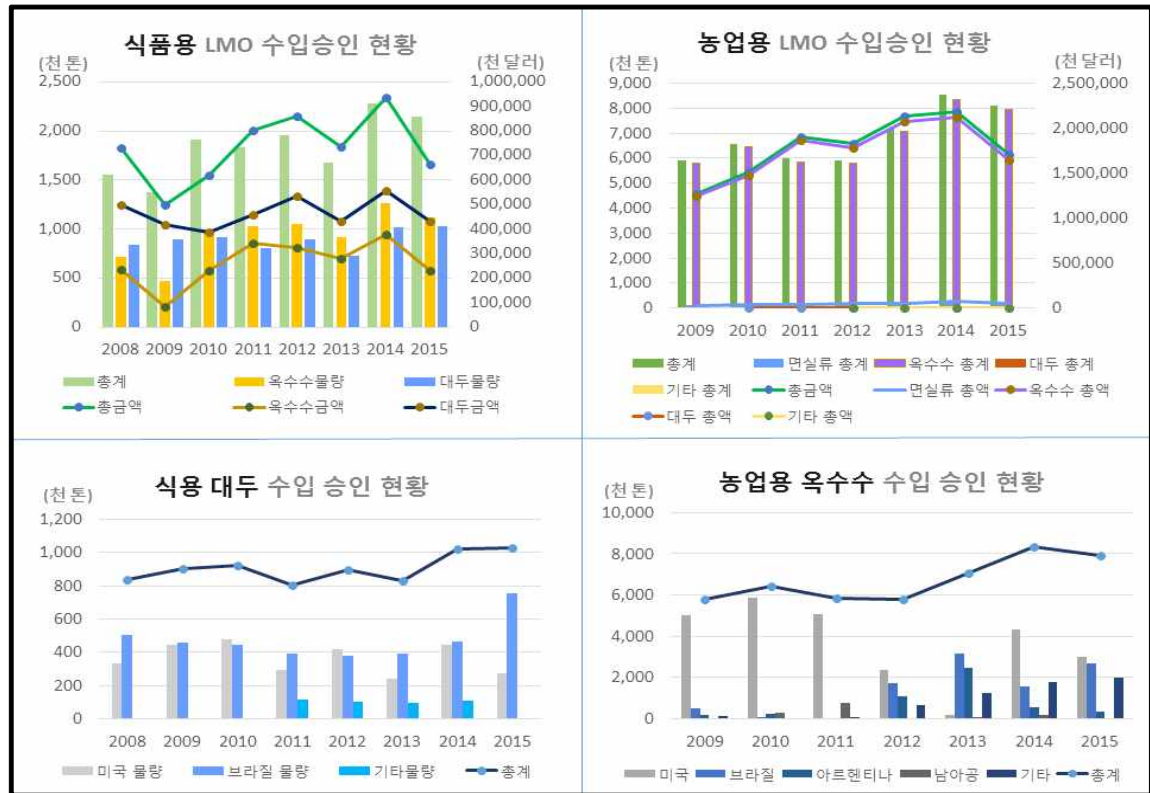
GMO와 그 대안

유경순 / 두레생협연합회 두레교육활동센터 사무국장

1. GMO란?

- 유전자변형 생물체(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란 인간의 필요에 맞게 재조합된 유전물질을 지닌 동식물을 가리킨다. 독한 제초제에 내성을 갖는 콩, 해충에 강한 옥수수, 인체에 유익한 올레산 강화 카놀라 등이 대표적이다.
- 유전자변형(GM) 농산물로 만든 식품을 말할 때에도 흔히 지엠오 또는 지엠오 식품이라고 한다.
- 엘엠오(LMO·Living Modified Organisms)도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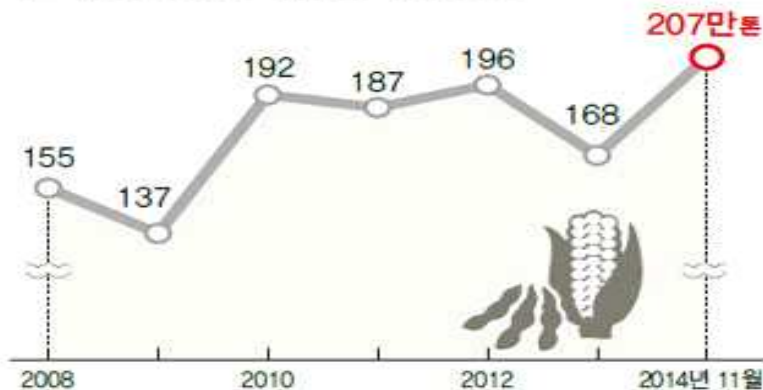
2. 국내 유전자변형 생물체(GMO) 현황



- 2015년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GMO 수입량은 2년째 1000만 톤(농업용 809만 톤, 식용 215만 톤)을 넘었다. 식용 작물로는 GM 옥수수 111만 톤, GM 대두 103만 톤 등으로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식용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연도별 수입 추이

자료: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통합정보망 관련 통계



3. 국내 GM작물 시험재배 현황

- 정부는 농촌진흥청 내에 GM작물개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주, 완주, 밀양, 평창, 수원, 천안, 무안 등 전국 19개 기관에서 벼, 사과, 콩, 감자, 토마토 등 17개 품종을 시험재배 하고 있다. 또한 그 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29,067m² 에 달하며 실험승인 면적은 5배가 넘는 150,476m² 것으로 알려졌다.
- 전 세계 64개국이 GMO를 금지하거나 표시를 강화해서 규제하는 가운데 농진청은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을 GMO로 만들어 상용화 하려고 하고 있다.
- GMO의 나라 미국도 그들의 주식인 밀에 대해서는 GMO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 GMO쌀이 상용화 된다면 쌀이 전면 개방된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미국과 중국의 GMO 수입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막을 명분이 없다. 또한, GMO벼의 꽃가루가 날려서 다른 벼들을 오염시킬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우리 땅이 GMO로 한번 오염되면 조작된 유전정보가 계속 퍼져나가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농진청은 쌀의 GMO상용화 입장을 철회하고 GM작물 개발사업단을 해체해야 한다.

연구개발 승인현황(2014년 10월까지)

단위 :건수

	계	병원	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민간회사 및 기타
2008	41	0	11	18	12
2009	75	0	26	45	4
2010	77	0	21	51	5
2011	233	0	69	156	8
2012	260	0	86	162	12
2013	273	0	98	167	8
2014	330	0	113	148	69

출처 : LMO 국가통합정보망

농진청 GM작물 시험재배 승인현황(2016)

19개 기관 17개 품목

정부산하 5개 기관 10개 품목

민간/공공 연구소 14개 기관 10개 품목

정부산하기관

- 국립농업과학원(전주/원주)
: 벼, 밀, 콩, 고구마, 유채, 들잔디, 국화
- 국립식량과학원(원주/전주/밀양/평창/수원)
: 벼, 감자, 콩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주): 사과
- 국립축산과학원(천안): 알팔파
- 국립산림과학원(수원)
: 원사시나무, 포플러, 이타리포플러

민간/공공연구소

- 서울대(서울/수원/군위/평창)
: 벼, 감자, 고추, 콩, 옥수수
- 영지대(군위): 벼
- 우리꽃연구소(이천): 포플러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대구): 벼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주): 벼, 콩
- 제주대(제주): 잔디
- 충북대(청주): 벼
- 경북대(군위/대구): 벼, 콩
- 경상대(진주): 벼, 잔디
- 경희대(용인): 벼
- 단국대(천안): 벼
- 전남대(광주): 벼
- 중앙대(안성): 고추, 토마토
- 송남대(대전): 들잔디



자료출처: 한국농업생명과학기술연구원

안전관리없는 시험재배 승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 방법과 조치사항 (제3-31조 제6항 관련)

- 가. 유전자변형식물의 파종 또는 재배는 지정된 작업장 내에서 해야 하고 **종묘 등이 작업장 밖으로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유전자변형식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격리포장시설 설치시는 **야생동물 및 외부인 등에 의해 유전자변형식물의 종자나 식물체 일부가 외부로 옮겨지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바. 유전자변형식물이 배수 중에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아.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유전자변형식물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학과 민간기업의 시험재배지

정부조차 관리가

'영망'인데 '민간'에서는...



대학과 민간기업의 시험재배지

시설 승인받은 곳은 **진주!**

실제 연구시설은
'사천'에서



근본적 검토사항

- **정부의 GMO연구개발 중단(금지)조치**
 -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 **정부, 위해성 심사와 수입·생산 승인 등 관리감독에 집중**
 - 세계각국 GMO에 대한 안전성 여전히 논란 중
- **대선공약화 등을 통한 정치적/정책적 결단 필요**

4. GMO의 안전성 문제

- 1998년 스코틀랜드에서 푸스타이 박사가 실험실 쥐에게 GMO감자를 계속 먹이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면역체계가 손상되고 백혈구세포의 활동이 둔화되어 각종 질병에 쉽게 감염되었다. GMO감자를 먹이지 않은 쥐에 비해서 두뇌발달이 더디고 간과 고환이 작아졌으며 췌장과 내장의 위축증과 퇴화증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암 발생이 현저히 증대 되었다. 이 같은 증상은 GMO감자를 먹이기 시작한 10일에서 110일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람의 수명을 적용할 경우 10년 전후의 청

소년 기간에 해당한다. 이 사건으로 유럽 전역에서 유전자조작식품이 선반에서 치워졌다. 유니레버, 네슬레를 비롯한 식품회사와 맥도날드 버거킹 등에서 GMO 콩과 옥수수 등을 사용한 제품을 치워야 했다.

- 2010년 러시아에서도 실험실 쥐들에게 식용GMO를 계속 먹이자 3대째 종이 전멸하는 불임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2012년 프랑스 칸 대학에서 셀레라니 교수는 쥐에게 2년간 GMO 옥수수를 먹이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장기손상, 뇌종양, 유방암, 신장과 간질환과 불임, 난임, 기형아의 발생등 암이 2배나 발생하고 암컷의 수명이 70% 단축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 이렇게 식품으로 이용된 GMO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식품이나 의약품과 같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품은 이미 그 문제점이 드러난 이후에는 그 회복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로 그 위험이 나타났는지 여부보다는 그 위험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가 더욱 중요하다. 즉, 위험에 관한 우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예방을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예방조치 없이 단지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그 상품의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의 산물을 살펴보면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 둘째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999년 5월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Bt 옥수수의 Bt 독성이 Monarch 나비유충에 치명적임을 보고한 이후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 ◎ 1999.8.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에서 BT면화에 대해 송벌레가 내성을 가진다는 연구결과 발표
- ◎ 1999.9.30. 영국 정부에서 GM 작물의 꽃가루가 4.5km 밖까지 이동할 수 있음을 보고
- ◎ 1999.12.1.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Bt 옥수수의 Bt 독성이 뿌리를 통해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감을 밝힘
- ◎ 1999.12.2.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GM물고기 한 마리가 40세대 내에 물고기 무리 전체를 절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모의실험결과를 발표
- ◎ 2000.8.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Bt 옥수수의 Bt 독성이 Monarch 나비유충에 치명적임을 재확인
- ◎ 2000.8.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에서 GMO 작물은 새들의 개체 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보고
- ◎ 2002.1.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무 실험을 통해 수퍼잡초의 위험성이 몇 세대 동안 계속된다는 사실을 입증

- ◎ 2002.2. 영국 University of Maine에서 GMO 작물이 교차수분을 통해 유기농작물을 오염시킨다는 연구결과 발표
- ◎ 2002.3. the World Conservation Union에서 GM 농작물이 동물 및 식물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축산비용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
- ◎ 2002.3. the European Environment Agency에서 GM 작물은 필연적으로 유기농작물을 오염시키고, 수퍼잡초를 만들며 야생식물을 멸종시킬 것이라고 연구 결과 발표
- ◎ 2002.6. 중국에서 GM 면화는 결국 환경을 훼손하고 해충은 내성을 가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보고
- ◎ 2002.8. 미국 Pew Initiative on Food and Biotechnology에서 유전자변형 식물들이 그들의 야생종과의 교차수분시 환경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발표
- ◎ 2002.12.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연구팀에서 면화를 먹고 자라는 벌레가 해충저항성 옥수수를 먹고 해충저항성을 가지게 되어 해충저항성 면화도 먹을 수 있게 됨
- ◎ 2003.1. 미국에서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갖춘 유전자조작 농산물 재배지에서 비슷한 내성을 지닌 ‘강력한 잡초’가 등장. 미국 동부 델라웨어주 유전자조작 콩 재배지에서 2000년 처음 발견됐으며 메릴랜드주, 캘리포니아주, 테네시주 서부와 중서부 옥수수 곡창지대인 인디애나주와 오하이오주 등으로 확산
- ◎ 2003.7. 캐나다 밀협회 등에서 GM밀을 재배하면서 라운드업제초제를 뿌릴 경우 토양 속의 병원균의 증식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연구결과 발표
- ◎ 2003.10. 영국에서 GM 작물이 있는 들판에서 모은 생물체의 수는 보통 작물이 심어진 곳에서 모은 생물체의 개수보다 적은 수였으며, 이것으로 보아 GM 작물에 사용한 제초제가 농장에 있는 야생동물에 해를 끼친다는 결론 발표
- ◎ 2003.12. 캐나다 농업 연구소에서 GE 작물에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푸사리움 마름병을 증가시킨다고 지적
- ◎ 2004.6. 일본에서 원재료용으로 수입된 유전자조작 서양유채가 수송과정 중에 떨어져 국내 일반 환경에서 자생하고 있음을 확인
- ◎ 2005. 4. 그린피스에서 중국산 쌀 속에 GMO 쌀이 섞여있음을 발견
- ◎ 2006. 8. 미국산 쌀에 GMO쌀이 섞여 4년간 판매되었음을 확인
- ◎ 2013. 미국 오레곤 주에서 유전자조작밀이 자라고 있음을 발견

GMO는 농민들이 더 많은 제초제를 사용하게 만든다.

- 몬산토는 ‘GMO 종자를 사용하면 독성농약을 덜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3년간은 수확이 늘어난다. 그러나 5년 안에 내성이 강한 슈퍼잡초가 생겨서 제초제를 더 자주 더 많이 뿌려야 한다. 효과는 떨어지고 농약 값만 더

욱 늘어나서 농가에 도움이 안 된다.

- 아르헨티나의 외진 산골 차코 주에서는 GMO 콩재배의 천국이 되었고 그 결과 아르헨티나 연간 수출액의 50%가 GMO콩이다. 차코에 GMO콩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차코의 다섯 살 어린 소녀는 온몸에 검은 반점과 검은 털로 뒤덮여 눈 망물만 반짝이고 있다. 차코지방의 어린이와 주민들은 뇌성마비와 종양, 암등 신체 곳곳에 중증 장애와 질병을 호소하고 있다. 신생아의 30%가 기형아로 태어나 죽었다. 차코지방에 GMO콩을 심으면서 내성이 강한 슈퍼잡초와 슈퍼 곤충이 생겨나 더 많은 제초제와 살충제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땅과 강이 오염되어 모든 생물체와 인간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GMO 전용 제초제가 발암물질로 판명되었다.

- 2015년 3월 아스피린만큼 안전하다던 글리포세이트가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발암물질2A 등급을 받았다. 글리포세이트는 GMO 작물과는 실과 바늘겨인 제초제이고 몬산토사의 대표적인 제초제 라운드업(Round Up)의 주성분이다. 라운드업은 불임증과 각종암,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IT의 스테파니 세네프 박사와 앤소니 삼셀 은 글리포세이트가 장 질병, 비만증, 당뇨병, 심장질환, 우울증, 자폐증, 불임증, 각종 암과 알찌하이머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2013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1위 GMO 수입국, 세계 최하위 식량자립국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은 23.4%로 최하위권이면서 GMO 곡물은 매년 1천만 톤 이상 수입하고 식용은 240만 톤으로 세계에서 1등으로 GMO를 많이 수입해서 먹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량은 42kg이고 GMO 식재료(주로 옥

수수와 콩, 카놀라유, 감자, 면화씨, 알팔파, 양식연어)등으로 만들어진 각종 외국산 가공식품과 첨가물(아스파탐, 프락토올리고당, 성장촉진제 등)의 수입량만도 별도로 120여만 톤에 달한다.



- 국내에서 제조 가공되는 약 7조 7천억 원의 가공식품의 원재료 7할 이상이 수입 산이며 그 8할 이상이 GMO이다. 가히 우리나라는 GMO 천국이라 할만하다.
- 특히 GMO 작물 중 콩의 경우 콩나물과 두부,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등 우리는 콩을 주식으로 먹고 있다. 우리나라가 콩의 원산지인 만큼 콩을 다양하게 먹고 있어 더욱 직접 섭취량이 많다.
- 우리가 먹는 식용유는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콩 102만 톤의 94%가 GMO다. 그리고 참치 캔 속에 노랗게 들어있는 카놀라유도 94% GMO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맥에도 GMO는 피할 수 없다. 콩기름 식용유로 요리한 닭과 어묵 등 튀긴 음식과 최근 독일산 맥주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뉴스를 보았다. 제과제빵의 경화유등 식용유를 피해서는 요리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식용유의 용도는 다양해 졌다.
- “콩 100%로 국내에서 직접 만든 콩기름”
- 마치 국내산으로 착각하게 만들지만 1200% 수입산 콩으로 만든 GMO 식용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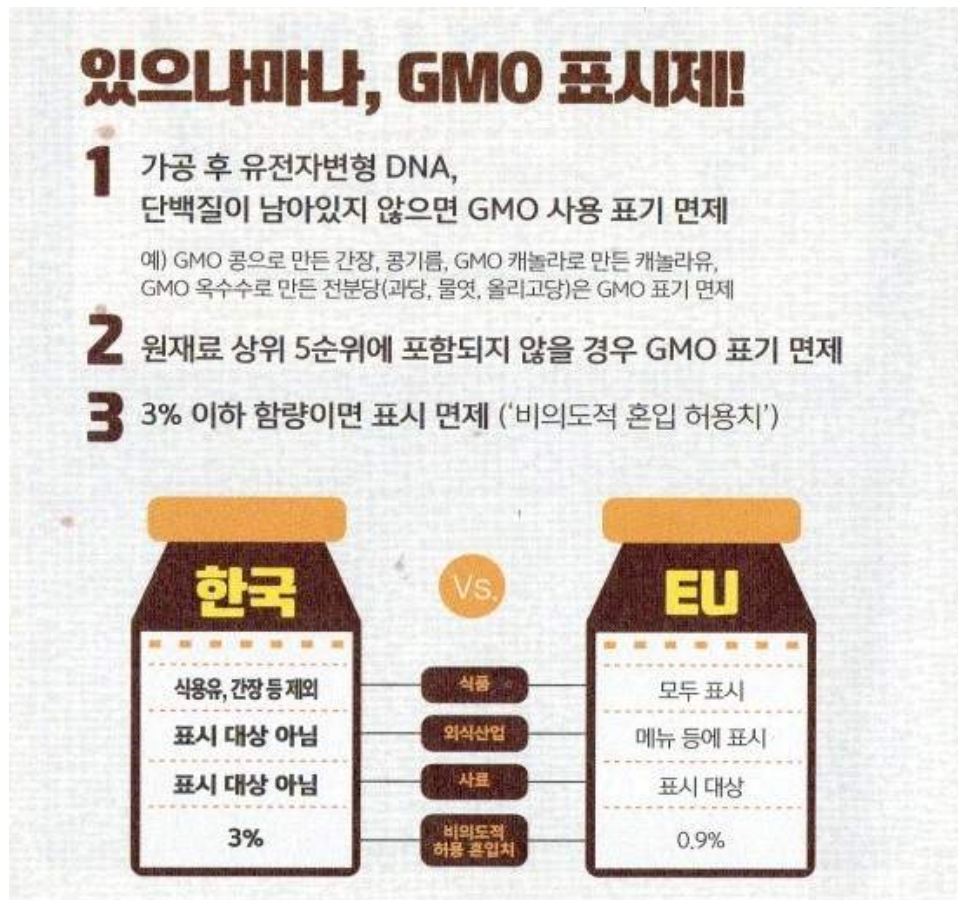


- 현재 수입되는 옥수수 104만 톤의 93%가 GMO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지는 액상과당과 물엿은 각종 가공식품의 단맛을 내는데 사용된다. 커피가게의 시럽과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는 거의 100% 들어간다.

5. GMO 표시제

- 표시제는 GMO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어렵고 평가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잠재적인 피해를 입게 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
-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표시제를 확대 시행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현행 표시제는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다.

GMO 표시제 개정 방향



1. 원료를 기준으로 표시. 즉, DNA나 단백질 잔류여부에 상관없이 원료가 GMO이면 GMO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

2. 현재 3%인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수준인 0.9%로 낮추자.
3. Non-GMO 표시에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 현행은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음.(세계적으로 재배하고 있고 콩,옥수수등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 의도하지 않은 혼입 없이 0%라고 장담하기 힘들. 이럴 경우 국내산으로 가공등을 했어도 Non-GMO 표시 불가)
4. 수입승인된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미 재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수입승인을 신청한 바가 없는 농산물이나 아직 상업적으로 재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험재배 등의 결과로 불법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농산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전세계 식용 GMO 수입 1위국인 우리나라는....

GMO(유전자조작식품)반대 전국행동대선 핵심 3대 공약 제안

[공약 1]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시행

- 현행 GMO 표시제 하에서는 식품가공 후 GMO원료의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올해 2월 법개정을 통해 주요 원재료 5순위만 표시의무를 갖도록 제한한 것을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가공 후 GMO원료의 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는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GMO 원재료 사용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GMO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식품의 GMO 포함여부를 정확히 알리는 것만이 시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 가공 후 검출 기반이 아닌 가공 전 원료에 기반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공약 2] GMO 없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실현

- 우리나라의 밀, 콩, 옥수수 자급률은 1.6% 남짓, 하지만 이웃나라인 대만은 0.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만은 콩과 옥수수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기존 5%에서 0.9%로 강화한 표시제를 2016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학교 위생법 개정을 통해 2016년 학교 급식에서 GMO식품을 금지했습니다. 콩, 옥수수, 연어, 두부, 두유를 포함한 과거 급식에서 허용되던 GMO식품이 전면 금지되고 이는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 모두 적용됩니다.
-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친환경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 농업과 환경, 생물다양성을 모두 생각하는 정책입니다.
- 이에 GMO 농수산물을 배제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영유아를 모두 포함하여 실현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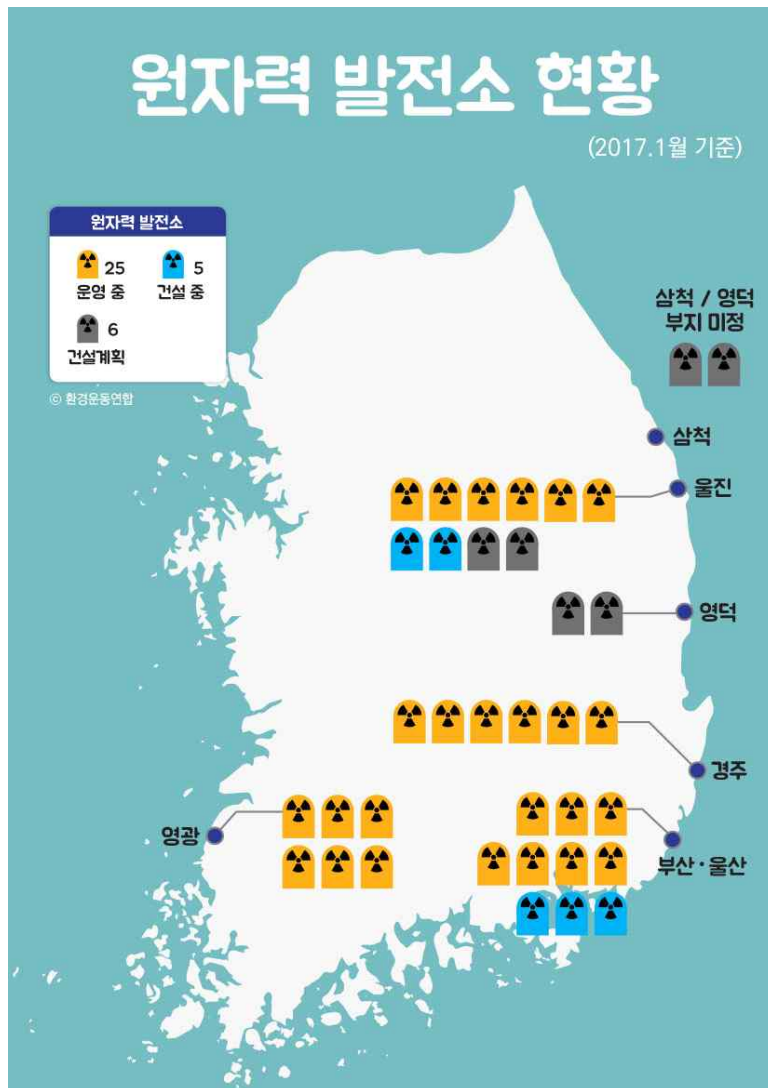
[공약 3] 국내 GMO 상용화 중단, GM개발사업단 해체

- GM작물개발사업단은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13개 작물 58종에 이르는 GMO 작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5 바이오안전성백서) 이 중 벼의 개발 비중은 약 41%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작년 거센 반대를 불러 일으켰던 향산화 기능성 GM벼 외에도 제초제 저항성 GM잔디, 바이러스 저항성 GM고추, 가뭄 저항성 GM벼 등 총 4종의 안전성 심사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이는 상업용으로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 농촌진흥청 이외 정부기관에서도 총 17개 작물 180종의 GMO를 개발하고 있으며 180종 중 94종이 벼에 해당합니다.(2014.09기준) 우리 주식인 벼의 무려 120여 종이 GMO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 한편 GM작물재배가 금지된 우리나라에서 자생 GMO사례가 수년 동안 발견되고 있습니다. GM작물재배로 인한 생태계 오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농사의 기본인 씨앗이 오염된다면 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국내 GMO 상용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탈핵 안전]

잘가라 핵발전소, 2017 탈핵원년을 만들자

안재훈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후쿠시마 사고 6년의 현실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사상 유례 없는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은 사람이 살수 없습니다. 아직도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핵발전소 방사능 수치는 더 올라갔으며 여전히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1천여개로 늘어나 약 100만톤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는데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아이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 저체중 출산까지 거의 모든 질병이 많게는 세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사산, 난치병 증가는 물론 인구까지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일본 경제산업성은 얼마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폐로와 보상, 제염 등의 비용이 과거 계산의 2배인 21.5조엔(약 215조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핵연료의 처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비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 작년 경주지진으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진위험 지역에 핵발전소 가동과 건설이 안전성 재평가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 부지 일대에 만 총 1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건설 중입니다.
-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은 알려진 것만 해도 61개가 8개의 활성단층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월성, 신월성 핵발전소부지에서 10km 지점인 울산단층대에 26개의 활성단층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부지에서 5km 지점에 일광단층대가 있고 신고리 부지 내에는 활성단층으로 의심되는 단층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허가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지진이 발생했다면 운영허가와 건설허가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탈핵만이 안전을 지키는 길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일본 규제당국은 핵발전소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상향시켰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만 수년이 걸렸습니다. 발전량 30%를 담당하던 54개의 핵발전소가 모두 멈췄습니다. 2년간 일본은 핵발전소 제로를 경험했고 재가동중인 핵발전소는 단 3기에 불과합니다. 독일은 80년대에 운영을 시작한 노후핵발전소 7기를 바로 폐쇄했습니다.
- 사고를 막는 길은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는 6월 18일 폐쇄되는 고리 1호기에 이어 수명연장 취소 판결된 월성 1호기 등 노후핵발전소를 우선 폐쇄해야 합니다. 지진위험지대에 내진보강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중수로 핵발전소 월성 2, 3, 4호기는 조기 폐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핵발전소를 늘리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 막 건설을 시작한 신고리 5, 6호기는 더 비용을 낭비하기 전에 사업을 취소해야 합니다. 또 완공단계에 이른 핵발전소들도 중단하고, 울진, 삼척, 영덕에 계획 중인 핵발전소는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핵발전소와 고압 송전탑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괴롭히는 일도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 한편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많은 양의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고준위 핵폐기물을 이용한 연구를 수십 년째 진행했으나, 인근 주민들은 최근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핵발전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이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했으며, 핵발전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 개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이제 핵발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불안한 핵발전소를 옆에 두고 살 수 없습니다. 10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후손들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약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불안하고 무책임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국민들의 큰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요구안]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 현재 한국은 25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1위의 핵발전소 밀집국의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것은 사고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해결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미래로 떠넘기는 일입니다.
- 또한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예정된 삼척과 영덕에서는 건설 찬반을 두고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투표를 방해하고 탄압했으며 아직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건설 허가를 득한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해 삼척, 영덕, 울진에 추진하는 모든 핵발전소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하라!

- 대전에서는 그간 핵연료 공장과 원자력연구원 등 각종 핵시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이들 핵시설은 그동안 계속 증설되었고, 최근에는 방사성 물질이 무단으로 폐기,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을 철회해야 합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와 고속로 추진 등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 경주에서는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핵발전소 월성 1호기와 나머지 핵발전소의 안전성,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은 국

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하라!

-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한다며, 정부는 임시저장고 증설 계획이 포함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핵발전소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되었음에도 일방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핵발전소 소재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리계획을 철회하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사용 후핵연료 공론화를 재실시해야 합니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과제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 중장기적인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탈핵의 시점과 목표, 내용을 담은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 현행 신재생전력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 수익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큰 어려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 효과를 봤던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산업, 연구, 일자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발제 2 영역별 안전과제_5

[화학사고 안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 사회 -노동자/주민/소비자의 알권리-

현재순 / 일과건강 기획국장

“비밀은 위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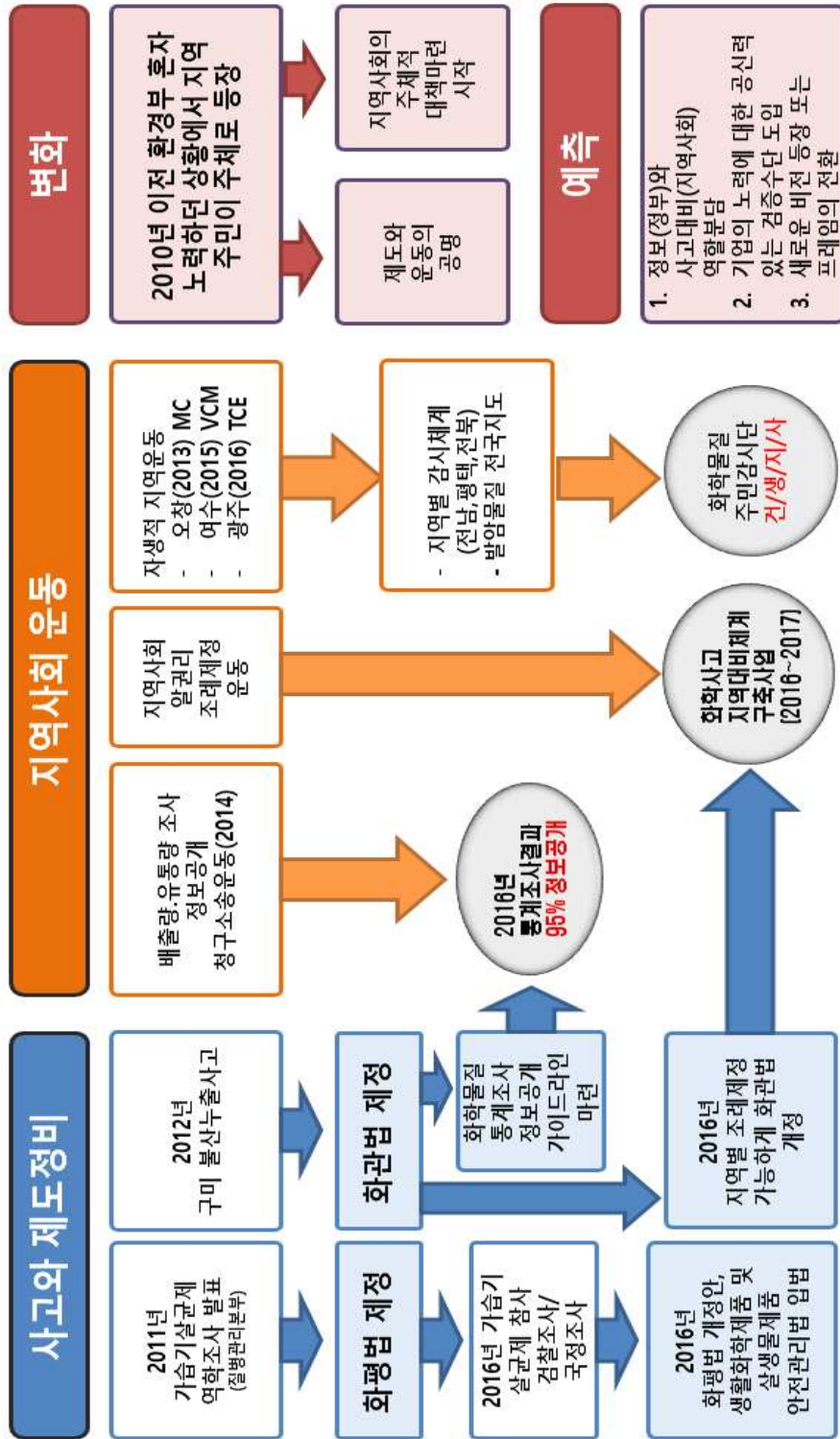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노동자/주민/소비자 알권리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기획국장
현재순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변화



김신범_2017 노동자건강권포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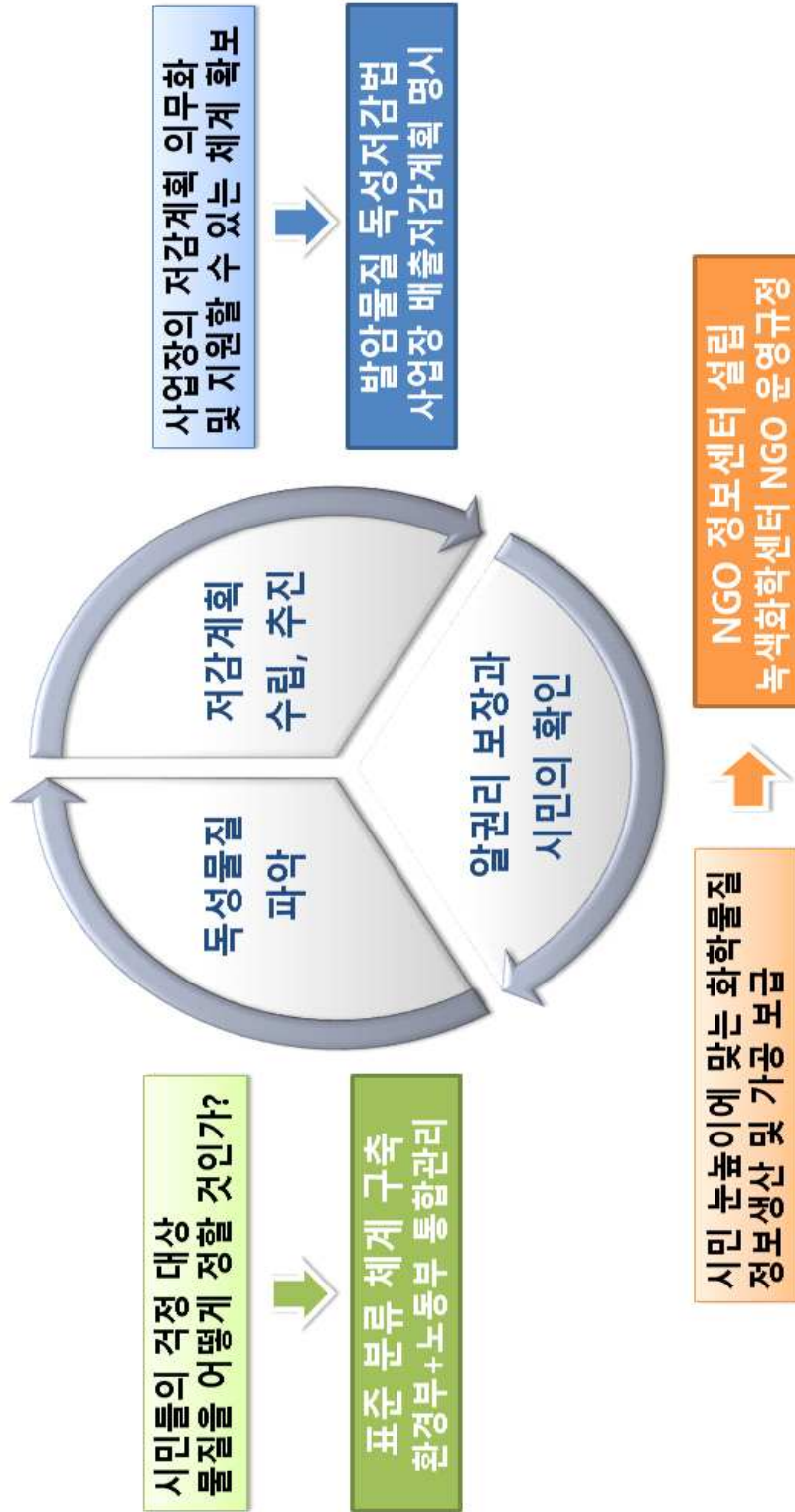
화학물질 알 권리 운동 진행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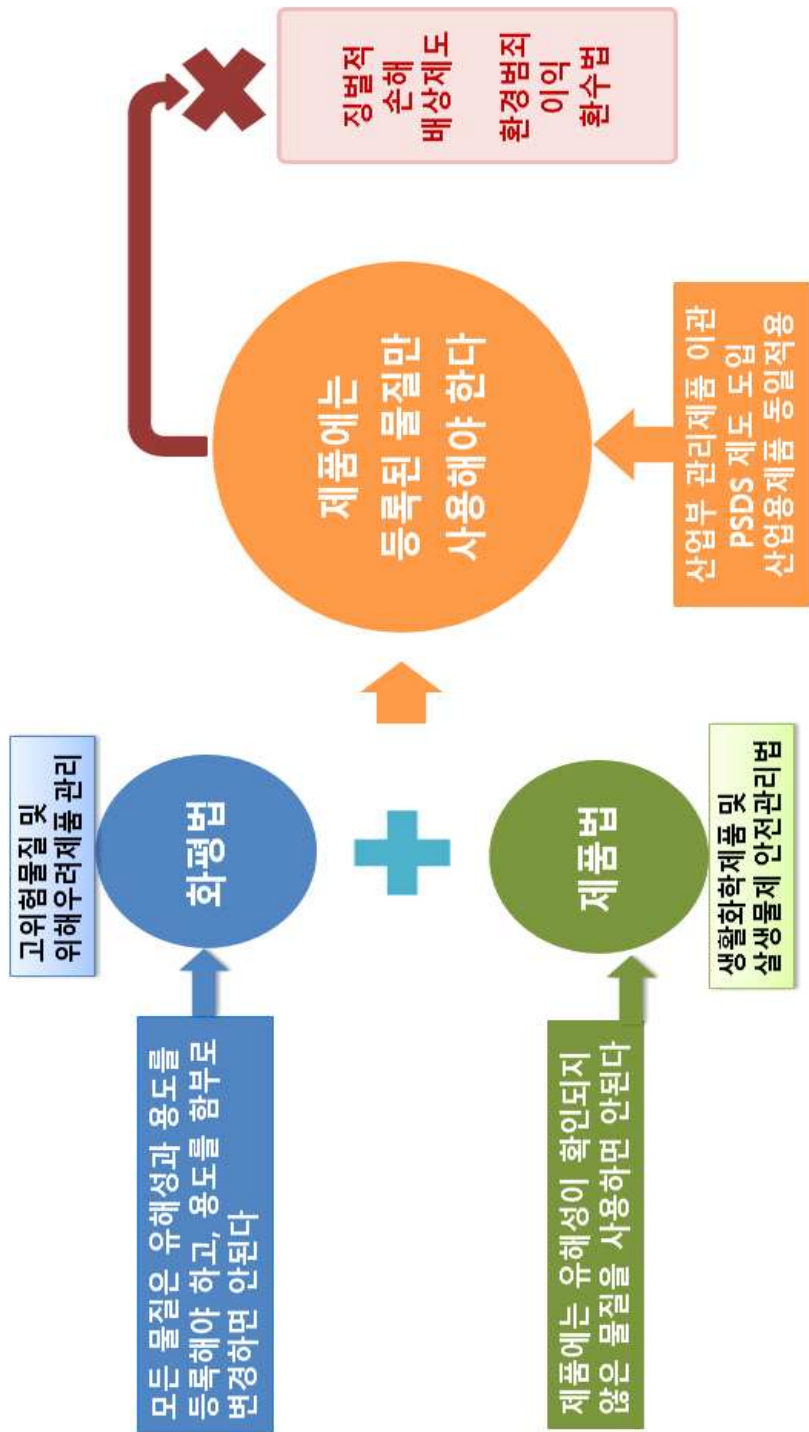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3대 과제

1. 발암물질 없는 나라
2. 제품관리 제대로 하는 나라
3. 알권리는 보장하고 비밀은 엄격한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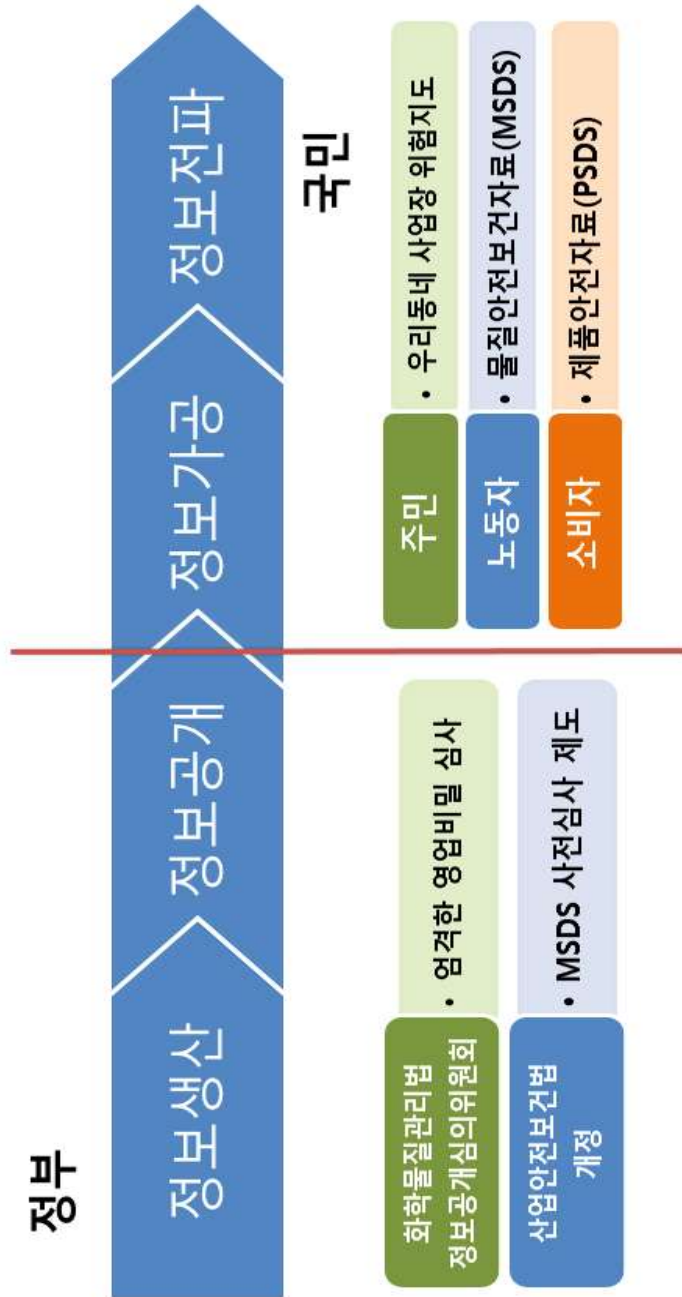
1. 발암물질 없는 나라



2. 제품관리 제대로 하는 나라



3. 알권리는 보장하고 비밀에는 엄격한 나라





[피해자 권리]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건너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피해자 권리의 회복이다

강찬호 / 가슴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제가 맡은 발제는 ‘피해자 권리’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모든 것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학 여행을 떠난 아이들이 바다에 빠져 침몰하는 배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물끄러미 바라보는 나라.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심지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의 7시간은 ‘벌거벗은 임금님’같이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 유독물질로 지정된 살생물제, 유해 화학물질을 호흠해 죽고 다친 것으로 판명 났음에도 피해자들의 문제를 살인기업(가해기업)과 알아서 해결하라며, 손을 놔버린 대한민국. 역시 ‘안방의 세월호’ 사건으로 불리는 가슴기살균제 참사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 두 참사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국가의 무능, 기업의 탐욕이 무고한 생명을 죽음

으로 내 몰았습니다. 사고의 수습에서 은폐와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전에 막을 수 있었거나, 사고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시그널,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피해규모를 키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기댈 수 있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당한 자만 억울하게 된다는 현실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떠날 수 만 있다면 이민이라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싶습니다.

-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물에 빠진 이가 있다면 즉각 구조해야 합니다. 유독물을 마셔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있으면 우선 살리고 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절대선이고 절대명령입니다.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슴기살균제를 구입해 사다 쓴 이들. 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국가를 믿고, 기업을 믿고, 사회를 믿은 대가로 목숨을 잃고 다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는 한 순간에 개인의 삶과 가족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붕괴시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은 말과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됩니다.
-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공포는 불안입니다. 불안은 안전에 대한 반대말입니다. 인간은 안전해야,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져야 최소한 행복의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입니다. 아이가 엄마 배속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세상 밖으로 나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늘 알게 모르게 안전에 대한 주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최소한의 안전이 아닌 생명에 위협을 받고, 신체적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은 인간이 누려야 할 근원적인 '안전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가 존재의 근본적 이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세월호나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사고를 겪고 국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면 부모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것도 같습니다.
- 최소한도의 안전조치 지켜주지 못한 나라에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논하는 것은 어찌면 사치인지도 모릅니다. 긴급구제, 우선구제는 피해자 당사자들의 생존권, 생명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들의 삶을 신속하게 원래대로 돌려 놓는 것이 기본이고 원칙입니다. 사회구조와 모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의 삶을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원상회복 시키는 일은 당장 물에 빠진 이들을 구하는 일만큼이나 시급한 일입니다. 그것이 최소한도의 피해자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사회가 아무리 애를 써도 피해자들과 가족의 삶을 원래 자리로 돌려 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 사람은 돌아 올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은 다만, ‘경감’ 시키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원래 자리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애를 쓸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어떤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사자들은 그들만의 삶을 견디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들의 몫입니다. 일상의 삶은 행복이고, 생명 그 자체는 인권의 본질입니다.

- 그런데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월호와 가슴기살균제 참사에서 보여진 현실은 무엇입니까. 가슴기살균제 참사를 보겠습니다. 원인미상 간질성폐질환의 원인이 가슴기살균제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 2011년 8월 31일입니다. 2017년 3월 말 현재, 가슴기살균제 참사의 피해규모는 피해신고 5,531명입니다. 이 중 사망자는 1,168명입니다. 반면 지금까지 정부가 피해판정을 한 인원은 98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4,549명이 대기 중이거나 진행 중입니다. 3월 27일 환경부 보도자료를 보면 151명이 피해배상을 받아,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종료되었다고 발표합니다. 판정작업이 진행이 된 982명 중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이들의 숫자가 151명인 것입니다. 151명에 포함되지 않은 상당수는 정부 인정 피해자에 포함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사건 발생 이후, 정부의 피해접수와 판정작업이 지지부진합니다. 피해자 판정 역시 협소한 기준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정부는 2011년 당시, 피해의 원인을 밝히고서도 피해대책의 책임은 기업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발을 뺐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역학조사로 원인만 밝히고, 할 일 다했다고 손을 털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조는 현재까지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와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하는 시늉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소주의’입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만 5년이 지나고 6년째 접어들었음에도 982명 판정, 151명 민사상 손해배상 해결의 수준입니다. 정부의 책임은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업의 책임을 전제로 한 구상권 방식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최우선적인 판단과 접근은 부재하고, 정부 부처 간에 핑퐁 게임만 있을 뿐입니다. 조금 하고 생색 내는 일만 합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선의를 베푸는 모양새입니다.

○ 정부의 태도, 입장이 이러니 가해기업, 살인기업이 문제 수습에 적극 나설 이유가 없게 됩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뒤로 빠지고, 최소주의로 문제해결에 접근합니다. 2016년 검찰 수사로 세상에 알려진 대로 수많은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해 놓고서도, 옥시가 또 다시 피해자와 가족들, 소비자와 국민들을 우롱했던 것입니다. 서울대 교수 등 사건에서도 보듯이 우리 사회 양심은 바닥을 칩니다. 정부의 외면과 기업의 파렴치한 태도의 근저에는 피해자 당사자들에 대한 태도와 시각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고, 모두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무가 국가와 기업, 사회의 최우선 책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곧 피해자 당사자들의 권리이자, 인권이라고 하는 시각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 물에 빠진 이들을 구하지 않고 생존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삶을 우선적으로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재발방지, 진상규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성립될 수 있습니까. 피해자 당사자들의 시각과 입장을 배제하고 사고를 수습하고 각 종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피해자의 문제, 피해자의 인권의 문제는 모든 것의 출발이자 본질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원칙과 태도를 가지고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는 것인지를 유심히 관찰해 볼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피해문제를 돈의 문제로, 각 종 정치적 이해관계의 희생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언론 보도의 태도를 모니터해도 이런 유사한 문제들은 드러납니다. 피해자 문제를 본질과 주체의 문제로 보는 것인지, 해결해야 할 대상의 문제로 보고 있는지를 들여다 보면 그 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토론하고 발전시켜가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피해자와 가족 당사자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할 수 많은 숙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2016년 검찰 수사로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다시 사회적으로 조명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하며, 함께 분노했습니다. 옥시불매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일부 가해기업들이 언론과 검찰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가해기업의 일부는 구속되었습니다. 이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이슈가 옮겨졌습니다. 탄핵이 되었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1월20일 가습기살균제 구제특별법이 미흡하지만 통과되었습니다. 3월9일 광화문에서 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전국넷은 ‘제2의옥시불매’를 선언하고 매주 목요일 옥시불매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고, 가해기업이 정부 뒤에 숨어서 대충 사건을 마

무리하려는 꼼수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조사,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조사 연장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가해기업에 대한 수사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한국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한 파렴치한 기업, 여타 국내 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 사건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수습, 피해수습과 대책마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가려져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음습합니다. 국가의 감독권과 통제권이 발휘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업의 비밀주의를 끊어내고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2의 가슴기살균제 참사, 세월호를 막기 위해 탐욕스런 기업을 통제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고작 법정 최고형이 7년인 나라를 계속 용인해야 합니까. 살 인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는 도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소비자를 죽이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할 처벌법은 도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유해한 화학물질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더 이상 세상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충분한 조치는 취해져 있는 것입니까. 물에 빠지고 유독물에 노출된 피해자를 즉각 구제하고, 그들의 삶을 원래 자리로 복귀시킬 수 있는 즉각적인 구조와 지원의 시스템은 충분히 갖췄습니까. 더 이상 골든타임, 시그널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위험사회에 민감하게 대응할 준비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옥시아웃’은 피해자의 눈으로 위험세상을 바라보는 일이고, 탐욕스런 기업을 퇴출시키는 일입니다. 철저히 재발방지를 통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완벽하게 넘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피해회복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의당]
**시민참여적 협치를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당 국회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광주 광산구을)

**1. 서언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재난 이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쇄신과 책임고양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태풍, 홍수, 대설, 가뭄, 지진과 해일 등의 자연재해와 함께 대형화재, 구조물의 붕괴, 항공과 항해사고, 화생방사고, 원전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위험과 전염병에 의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임을 환기시켜주었습니다.
- 국민의당은 정부와 관련기관의 만연한 무책임을 일신하고, 각종 위험과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재해 및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 본 토론회에서는 발제해 주신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위한 우선 10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국민안전시스템의 재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현행법상의 국가재난관리조직체계상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와 관련한 규제개혁위원회 조직구성에 대한 문제점,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실천 : 국민안전시스템을 재구축하겠습니다.

- 1)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을 조직적·제도적으로 구별하여 사전예방을 전문화·구체화 하고, 사후대응을 효율화하겠습니다.

가.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총괄조직으로서의 기능(협의·조정, 촉진, 관리감독, 지휘·명령 등) 수행
 - 개별법에 따른 고유업무 수행
 - 소방·해경 통합에 따른 긴급구조업무 수행
- (평상시) 정부조직법(제22조의2),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모든 부처와 관련된 협의·조정, 촉진 등의 업무 추진
 - 안전기준 상충문제 해소, 안전정책 협의·조정, 재난안전관리 기준 및 표준 마련·보급, 부처의 재난대응역량 평가, 안전규제 강화, 안전문화 활성화 등 개별부처는 분야별 전문성에 기초하여 안전관리 업무 수행
- (비상시) 대형재난 시에 범정부 협조 하에 재난수습 총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재난수습 총괄, 수습본부 지원, 각 부처 보유한 자원 활용 극대화, 중대한 재난대응 정책 결정, 국민참여 유도 및 홍보 등

나. 문제점

- 홍수, 태풍, 지진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재난에 따른 국가위기는 외부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과 사회구조적인 위험성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재난관리의 과정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 현행 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전체적인 법률체계를 이와 같은 단계로

편성하고 있음.

- 재난사고의 경우 피해보다 복구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됨.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관리에 있어 아직까지 대응중심으로 되어 있어 재난관리방향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하여 재난사고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으며, 대응을 위한 비용도 함께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임.

- 또한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전담조직으로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신설 되었으나, 재난안전관리 추진에 있어 통합적·체계적 관리에 한계 노출
 -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의 한계
 - 국가 재난대비체제 취약재난관리 과학화 및 특수재난 관리 미흡

다. 대책방안

- 생명·안전 관리 국가 컨트롤 타워 체계 구축
 - 안전처의 안전기준과 방재 정책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재해·재난발생 사전예방체계 구축
- 소방본부와 해양경찰본부를 외청으로 분리·독립하여 재해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재난 발생사후대응체계 강화
- 중앙재난관리대응본부의 조직체계재난대응 전문인력의 양성

2) 규제완화에 대한 조직·제도적 보완하여 규제완화에 따른 위험을 감소 시키겠습니다.

가. 현황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근거 및 목적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98.3.1.[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발전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 규제의 심사,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규제의 등록.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

-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봄(동법 제28조).
- 분과위원회는 경제분과와 행정사회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의 소관부처 규제 중 중요규제로 인정된 규제를 심사함. 이 중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한 안건의 경우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함.
-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함(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1조).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현직
위원장	서동원(위원장)	김&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
위원 (가나다 순)	김종일(위원장)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경희	논설위원
	김진국	한국규제학회 회장
	박대근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박형수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원장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이인실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한성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의찬(위원장)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과 교수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박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인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나. 문제점

- 위원 임명 절차의 문제
- 공공안전,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위원 전문성 부족
- 이해 충돌 방지 규정 미비

다. 대책방안

- 규제완화와 안전에 대한 정부기관의 기능 분리
- 규제개혁위원회 의제 중 안전과 관련한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안전처 등 안전관련 기관의 거부권 부여
- 위원구성에 있어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성 안배
- 안전관련 규제완화 원상회복 추진

3) 시민참여 감시제도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제도를 재구축하겠습니다.

가. 현황

○ 시민 참여 감시제도의 미비

- 2013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그 위원회 활동으로 시민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처벌 미비

- 현행 법체계에서는 기업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재해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안전조치 위반 내지 과실이 인정되는 개인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기업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가능함.
- 현재 대법원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법인 내지 기업은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

나. 문제점

-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에도 정부는 안전을 기업의 사업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시민 참여 없는 국가 안전 대진단 등 전시 행정을 반복하였으며, 시민안전에 대한 시민참여를 보장하지 않았음.
- 2013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위원회 활동으로 시민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대책방안

○ 시민참여 거버넌스 강화

- 현행 관주도의 일방적 거버넌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지역안전관리 시스템에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 지자체별 안전위원회, 안전 감시단 관련 조례 제정과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
- 화학물질 및 사고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 참여권 보장
- 철도, 지하철, 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 안전에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 제도화
-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사고조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하청 노동자 참여 보장, 중소기업사업장 안전관리 위한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혁 등을 도입

○ 중대재해 기업처벌 등 책임제도 강화

- 기업 자체, 기업 경영책임자, 정부 책임자 처벌 및 처벌 수준 강화
- 집단소송제 등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4) 제복입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통한 안전강화하겠습니다.

가. 경찰소방직 공무원의 인력증원과 근무환경 개선

- 시민안전 직결되는 공공부분의 안전인력 확충

나. 제복입은 시민들의 권익보호

다. 안전관련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공공부문 안전인력의 정규직 직접 고용
-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제한

3. 결어 : 국민안전이 최고의 안보입니다.

1) 시민참여와 신뢰에 기반한 위험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초고속 성장 이후 출현한 복합적인 위험사회는 종래의 관료적 정부조직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예방과 관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에 기반한 새로운 참여적 위험예방 협치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참여주체의 신뢰와 협력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아갈 것입니다.

2) 재해와 재난의 예방체계 강화하겠습니다.

- 소방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식품안전, 의약품안전, 질병안전, 환경안전, 원자력 안전 기준을 엄격하고도 선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정보 폐쇄성의 문제를 개혁하여 재해와 재난 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재해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며, 재해와 재난관리를 위한 최첨단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할 것입니다.

3) 재해와 재난 지휘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여 ‘인재(人災) 제로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문성 없는 인사로 인한 행정공백 상황을 개혁하고, 재해와 재난 분야 최고 전문가가 관련 기구의 책임을 맡고 결정권을 가지는 체제로 혁신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각종 재해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기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합동대응체제도 유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안전 공약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재인 후보 법률특보단장/서울은평갑,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한 대한민국

1. 자연 · 사회적 재해 · 재난 예방
2. 생활안전 강화

왜 안전한 대한민국인가?

○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 전체를 성찰하게 만든 중요한 사건임. 국가의 안전시스템이 무너져 꽃도 피우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 희생되었으며, 국민은 절망했고, 함께 울었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하고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임.

○ 세월호 참사, 메르스, 지진, 태풍, 미세먼지, AI까지 모든 재해·재난 위기 상황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유해물질의 유출가능성 있는 제품이 위해성 평가 없이 관리되는 등 인재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야 할 것임.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핵에 대한 세계적 추세가 진행되고 있으며, 원전 인근 지역인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원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최근 들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일상 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질병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맞는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함.

○ 각종 대형 재난이 증가하고 있고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을 지켜주고 있는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심지어 소방관들이 사재를 털어 장갑을 구매하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소방 현장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조직을 독립시키고 119응급구조 서비스도 선진화시킬 것임.

○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독도·이어도 등에 대한 주변국의 도발 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임. 해양경찰 조직을 개편하여 해양안전을 확보와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 할 것임.

○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헌법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1.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해양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해양지진, 쓰나미 등 대형 해양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해양예측 및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추진
- 너울성 파도 등 연안이상 현상의 발생원인 규명 및 재해 저감을 위한 예측기술 개발(R&D), 해역별 예·경보 시스템 구축

2.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개헌 시 국민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 재난 관리능력 강화
- 자치단체 재난관리 역량 강화
 -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 강화
 - 재난대응 지휘·보고체계 단일화를 통해 신속한 대응구조 구축
 - 시군구의 재정, 인력 및 업무능력에 대한 현실적 한계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3.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 현장조직 확대 등 국가의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총괄 지원체계 구축

- 정부의 정책 수립 조정, 공공과 민간의 전문자원 활용을 연계하는 협업 거버넌스 구축으로 국가재난 트라우마 총괄 지원체계 마련
- 소외계층을 배려한 취약 특성 맞춤형 안전복지 실현
 - 안전약자 맞춤형 안전복지 제도 및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 재난대비 시스템 강화
 -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확립
 - 다중이용시설 내진 설계 확대 및 내진시설 보강 강화
 - 재난대피소의 설치 및 지정에 대한 재정 지원 추진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4.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 사람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중대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 강화 추진
 - 기업의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책임을 과실치사로 묻도록 하는 ‘중대사고 기업처벌법’ 제정
-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전 교육 및 홍보 등 예산 확대 추진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 제거
 - 보행안전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
 - 식품표시제 도입, 통합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올바른 먹거리문화 정착
- 어린이 안전사고 최소화
 - 전 교사의 안전교육 이수로 안전교사화
 -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 안전교육’ 확대
 -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 확충 및 단속 법규 강화 추진
 -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 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해 CCTV 확대

5. ‘세월호 참사 방지’ 를 위해 노후 되고 낙후된 연안 여객선 및 접안시설을 개선 하겠습니다.

- 세월호와 같은 여객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적극 지원
-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운항실적에 따라 적정수익을 보장하여 도서민에게 교통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준공영제 도입
- 선박안전 및 선원관리를 통합·운영을 통해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항 확보
- 낙도의 여객선 기항지 항·포구시설 개선사업 확대로 안전시설 확충 및 편의 강화
 - 소규모 항포구 161개소(기 완료 27개소)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지역·항로별 운항여건 및 선정에 따라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등 낙후된 기항지 개선

6. 축산 방역 조직 강화로 시·구제역 해결하겠습니다.

- 축산 방역 조직 강화
-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속추진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및 소비유통 지원
- 항생제 사용억제, AI 백신에 대한 연구 및 생산체계 구축
- 가축질병공제 제도 도입,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
 - 반려동물 표준수가 정착 및 생산업 허가제 도입

7. 감염병 전문병원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체계 강화를 통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습니다.

-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추진
 - 신종감염병 발생시 환자를 즉각 격리 입원시키고 전문적인 치료 제공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대응센터 신설
 - 전국 어디서든 감염병 발생시 전문가가 즉각 투입되는 대응체계를 완비
- 전문 역학조사관을 충원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능력을 확실히 갖추

수 있도록 전문조직으로 육성하고 권한을 강화

8.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 대책 특별법」 제정
-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마련
 - 30년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허가 진행 미착공 신규석탄발전소 신설중단(4기), 화력발전소 발생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도입(미세먼지 과다 발생 승용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거둬 저발생 승용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 미세먼지 취약계층 피해 저감 대책 추진
 - 산단이 집중된 포항, 석탄화력발전소 많은 당진·보령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
 -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의무화
 - 취약계층 마스트 지원 사업
-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9.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EU, 미국과 같이 살생물질과 함유제품을 별도 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 보강
- 「환경범죄이익 환수법(3배이내 배상 책임)」 제정 추진

- 「유해물질의 알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의 면책조항으로 영업비밀을 남용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비자와 국민들의 유해물질에 대한 알권리 보장
- 가슴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10.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원전 로드맵 마련
-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의무공급비율 목표 상향조정,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1.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상근 위원 수 확대
 - 발전용 원자로의 건설·운영·수명연장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운영허가 등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 강화
-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에서 분리하여 독립성 확보
- 신고리 5, 6호기 신규건설은 최대지진 재평가결과 해당부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 중지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생활안전 강화

1. 민생치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치안을 통한 예방치안 활성화로 국민안전 확보
 - 경찰과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범죄예방의 책무를 가지고, 위험지역 환경 개선, 범죄예방에 참여토록 함
 - 자치경찰제 실시
-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사회적 약자 등의 보호를 위한 민생치안정책 수립
 - 학교보안관, 배움터안전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제도 및 운영 개선
 - 범칙금 및 과태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 검토
- 과학기술과 치안 R&D를 활용한 치안환경 조성으로 한국형 ‘스마트 폴리스’ 모델 개발
 - 우리 실정에 맞는 치안과학기술 R&D 개발 등 치안과학 투자 확대
 - 지역별 각종범죄지도 제공 확대
-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검토
-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경찰인력 신규 충원 확대

2. 119 소방청 설치, 소방인력 보강 등을 통해 소방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 현행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를 119 소방청으로 독립
 - 소방공무원 일부 국가직화 검토
- 소방 공무원 3교대 부족인력 충원 및 근속승진 확대,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 등 사기진작대책 추진
- 소방교부세 자주적 운영
- 심리건강관리센터(트라우마 센터), 소방전문병원 설립 등을 통해 소방관

전문치료 및 재활치료 지원

-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선제적 화재예방으로 국민안전 확보
 - 인명피해가 많은 주택화재예방을 위해 경보기 등 소방시설 보급
 - 소방특별조사요원을 확충하고 체계적·선제적인 예방활동 및 안전점검 강화
 - 소방차 진입도로와 방화 대피로 가로막는 행위 처벌 강화
- 보다 촘촘한 형태의 구급망을 구축하여 119 응급구조서비스 선진화
 - 구급대가 없는 95개 농어촌지역(소방 지역대)에 119 구급대를 추가 배치하고, 도서, 농어촌지역 등 응급의료사각지역을 커버하기 위해 응급헬기 배치 확대

3.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행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청’으로 독립
 - 해양경찰의 수사 정보기능 정상화를 통해 해양안전 확보 및 해양주권 수호 실현
- 해경 현장 인력 증원 추진
 - 해양사고로부터 국민보호와 불법외국어선으로부터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함정 및 항공기 운용 인력, 안전센터 개선 인력, 상황센터와 VTS 개선 인력, 구조인력 보강 등에 활용
 - 근속승진 확대, 직장협의회 설립 등 사기진작 대책도 추진
- 독도, 이어도 해역 등에서 해양주권 수호 역량 강화

4.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중국 불법조업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전용 위성망 확충 및 불법어업 공동대응 능력 강화
 - 중국어선 불법조업·폭력저항 실황을 중국 측과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하여 중국 정부와의 공조단속 등 체계 강화
 - EEZ 입어 중국어선 종합관리, 불법정보 이용·단속, 나포어선 허가유무,

- 물수대상 여부 확인 등 IUU어업 감시·감독 및 통제 추진
- 대용량의 채증자료를 초고속으로 공유가능 하도록 자가전용위성망을 확충하고, 동 시스템의 24시간 운영 추진
- 어업지도선 확충, 장비 현대화 등 광역 감시망 확보로 불법조업 신속 대응
- 합법적 입어 중국어선에 식별장치(전자허가증) 부착 추진
 - 한·중 협의를 통해 불법 어선 식별관리시스템 구축
-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외교적 협력 관계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 다양한 경로를 통한 중국 정부의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 촉구

5. 수산물 클린인증 제도 도입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위생관리 실시로 안전관리체계 강화
 - 대중성 어종(70여종)의 출하 전 안전성 검사 강화로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 사전 차단
- 유통경로의 투명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 원산지 표시제 의무대상 품목 확대와 단속인력 확충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위한 수산물 클린인증 제도 도입 추진(최종 소매단계의 위생·안전 보증)
 - 대중성 어종 및 유통경로 불투명 어종에 대해서 수산물 이력제를 의무화
- 고효율·친환경 양식장 조성
 - 바이오플락, 순환여과 등 자연재해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양식이 가능한 양식장 조성
-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확대
 - 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지 물류센터 확충 및 기존 수산시장 현대화 추진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위생운송수단(냉장·냉동탑차 등) 지원

5.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 등 30여 직종 종사자들의 학대 (의심)사례 파악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원 강화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다니는 아이들이 3일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시설장이 경찰서에 통보하면 경찰서에서 가정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제도화
- 학대사건 신속 개입 및 피해아동 보호·치료를 위한 인프라인력 확충
 - 아동학대 개입 전담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폭 확충
 - 피해아동이 충분한 기간 동안 보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 학대 현장 출동 전담 경찰관 배치

7. 친환경급식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 전략(푸드 플랜) 수립
 - GMO 완전 표시제 도입 및 식품표시제도 강화
-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안전인증 의무화: 농산물 GAP, 축산물 HACCP, 수산물 안전성검사 통과제품만 소매 허용, 그 외 제품은 가공품의 원료 등으로만 사용
- 친환경 학교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
 -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노인회관, 대안학교 등 아이들과 어르신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에 공공급식 확대 및 급식 공공조달에 친환경·로컬푸드·유기가공품 공급 확대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농민장터, 농가레스토랑 등 조성으로 30만 중소농에 소득 향상 추진

- 식교육, 도시농업, 슬로푸드, 전통 식품화의 홍보 확산
- 취약계층에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푸드스탬프) 도입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등 전략식품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 농어업 연계 생협 조직 활성화 지원
- 친환경농산물 분리경매제 도입

8. 인체 위해 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모든 인체적용 제품에 대해 인체 위해성 통합평가로 안전사각 해소
 - 인체적용 제품 포괄적 지정, 기업의 인체 위해평가 및 위해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정기·수시 평가계획에 따른 정부 직접 평가
 - 사용금지 성분 지정 등 인체적용 제품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인체 유해물질 총노출량 조사와 물질별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총량관리제 운영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
 - 국민 다소비 제품의 소비자 건강피해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 강화
 - 인체 유해성 확인 시 조속한 회수조치 실시 및 소관부처 조치 권고

9. 자연재해, 교통사고, 시설물안전, 생활불편 등 4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자연재해 예보시스템 구축
 - 내진설계·건축 공공 지원, 홍수용 저수·산림 육성, 가뭄용 연결 수로 확충, 싱크홀 방지
 - 한반도 통합국토공간정보 구축
 - 지진에 강한 안심국토 실현 및 지진재난 대응역량 강화
 - IoT기술 기반 지능형 건물·시설물 모니터링 대응체계 마련
- 4대 교통사고 줄이기
 - 빅데이터 기반 철도, 항공, 차량충돌, 터널사고 등 4대 교통사고 대책 수

립.

- 셔틀버스, 안전지대설치, 도심 제한속도 하향 등 어린이·통학생 보호 특별교통대책 수립

- 불법자동차·오토바이 통합관리 강화, 차없는도로 조성사업 지원

○ 대형 시설물안전사고 ‘제로’ 추구

- 교량, 엘리베이터 안전, 대형화재사고, 건설안전(지하안전 등) 등 대응 프로그램 구축

○ 층간소음, 상수도, 미세먼지, 에너지빈곤 등 생활불편 해소

- 방사능, 미세먼지 등 주요 위해요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민중연합당]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위한 정책제안에 대한 의견과 민중연합당 생명·안전 공약

이상규 / 민중연합당 전 국회의원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1. 여는 말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국민 생명안전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416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월호는 올라왔지만 9명의 미수습자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중 1,122명이 억울하게 희생되었음에도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작년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에너지 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위협의 외주화가 가져온 사회적 살인입니다.

1700만 촛불혁명이 원하는 사회는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국가대개조가 절실합니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되 보호해야 할 생명과 안전에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생명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만들어 갈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는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며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명과 안전을 해치거나 위협해 온 근본적 구조를 바꿔내고 관련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영역별 안전과제에 대한 의견

헌법에 생명·안전권을 명시하고 국민안전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국가가 보호해야 할 권리로서 생명과 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담지 못하고 있는 안전에 관한 기본적 내용과 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기본법을 제정해 기본정책방향 속에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기업살인처벌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산재사망사고를 기업살인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기업이 산재사망사고를 적극적으로 막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규제 완화가 불러온 참극이기도 합니다.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기업은 살릴지언정 국민은 죽음으로 몰고가는 범죄행위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외주화가 불러온 구의역의 죽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발제에서 제안해주신 공공교통의 안전위협요인과 개선방향 모두 중요합니다. 도시철도 기관사 중 1인 승무로 인한 공황장애가 자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인 승무를 금지하고 2인 승무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버스업종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문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개선방향으로 제시된 근로기준법 제59조 폐지 및 운전시간 규제 강화, 버스안전법 제정, 버스공영제 도입 확대, 중앙정부의 버스재정 지원 확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쌍용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자들의 자살이 속출했습니다.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기에 세월호 유가족, 미수습자 가족, 생존자와 그 가족들도 정신적·신체적·사회적 충격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GMO 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은 먹

거리 안전과 우리농업 살리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GMO 상용화 중단과 함께 토종종자 보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3.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의 생명·안전 정책공약

(1) 산업안전

Q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1. 중대 산업재해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 »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으로 중대 산업재해 축소 및 예방
2. '위험의 외주화'금지 및 원청의 책임성 강화
 - » 생명안전이나 공공안전 분야의 외주하청 금지 및 이를 어겨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의 책임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사망률 1위, 산재사망자수는 OECD 평균치인 0.48명(근로자 만명당 사망자수)의 3배에 달하고 있음.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1~2014년 기간 산재사망자수는 3만 4천명에 달하며, 같은 기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20조 7천억 원에 달함. 하루 5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250명이 다치는 산재왕국이나 다름없는 현실.
-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정부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의 40%가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발생하고, 주요 30개 기업의 산재사망의 85%가 하청 산재임. 그러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은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남. 기업의 최고 책임자 처벌은 없이 말단 관리자 처벌만 이어지고 있음.
- 원청 기업이 하도급을 주는 첫 번째 이유로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을 40%가 지목하였음. 재벌 대기업은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 하여 산재예방, 보상, 처벌에서 빠져 나가고 있으며, 산재보험료 할인은 매년 수백억 원씩 받고 있음.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과 「형법」 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만으로는 사망 등 중대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 과실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음. 결국 하급관리자만 처벌되거나 ‘숨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산재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산재사망이나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음.

- 영국, 캐나다 등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 산재를 줄여 나가고 있음. 따라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법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중대 재난사고를 예방해 안전사회를 이루도록 함.

■ 목표

- 원청 사업주의 책임성 부과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강화
-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 방법

-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 보건의료분야 및 공공안전분야(철도, 지하철의 선로보수나 정비업무, 원전의 방사능 관련 업무, 화학산업단지의 보수정비 업무 등)의 외주화 금지
 - 하청이나 파견근로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업 혹은 사업장 내의 중대산업 재해 발생 시, 원청의 직접 책임성 강화(법적 책임 및 산재보상에 대한 책임의무 부과)
 - 중대 재해 발생 시, 해당 법인이나 대표자에게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 사업장의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안전교육, 안전보건조치 등 원청의 직접 책임 강제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에 하청 노동자 참여 의무화(산업안전보건위원 구성에 참여, 산재예방에 직접 참여 보장, 사고조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권리 보장 등)
 -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처벌 강화.

(2) 탈핵안전

Q 공약

1. 탈핵기본법 제정
 - » 신규원전 건설 중단, 노후원전 폐쇄, 탈핵기본계획 수립
2. 원자력 진흥법 폐지, 원자력 문화재단 해체
 - »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지원 중단
3. 기후 변화 대응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 » 2030년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30%

1 탈핵기본법 제정

■ 현황

-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대부분 나라는 원전을 줄이거나,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는 탈핵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원전수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전확대 정책을 추진 중임. 신고리 3호기까지 총 25기 원전이 가동 중이고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삼척 등 신규원전 부지에 6기를 계획해 2029년까지 총 36기의 원전이 들어설 예정임.
- 100년만의 최대지진인 경주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최대지진, 내진설계 재평가를 하지 않았고 안전기준 상향조정 없이 일부 보강만으로 원전이 가동 중에 있음.
-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출하고 있는 액체와 기체 방사성폐기물로 인해 원전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과 암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의 경우 체내 삼중수소 방사능 오염이 어린아이들까지 확대되고 있음.
- 원전 추진에 따른 지역갈등, 송전탑 경과지역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

■ 목표

- 신규 원전건설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탈핵 기본계획 수립 및 작성을 위한 탈핵기본법 제정

■ 방법

- ‘탈핵 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2017년 탈핵원년 선언
-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건설 중 원전 보류 및 신규부지 백지화
-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지, 원전 가동연수 최대 30년으로 제한
- 산업부 장관이 실시계획 승인만 하면 건설허가 없이도 부지공사를 가능하게 한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 대형발전소와 고압송전선로 계획 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 제도 의무화
-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원전안전성 3자 검증제도 도입, 안전기준 상향 조정, 운행허가 갱신 시기 10년 이내로 축소하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

2 원자력 진흥법 폐지, 원자력 문화재단 해체

■ 현황

-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원자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규정한 원자력진흥법은 탈핵기본법 제정의 취지와 어긋나므로 폐지되어야 함.
-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의 3.7%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 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지원받는 곳이 바로 원자력 문화재단임.
- 연간 총 1조원이 넘는 기금 중 2009년 93억 원 가량, 2010년 95억 원 가량이 원자력문화재단으로 투입. 전기요금에서 원자력 홍보비가 나가고,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불합리.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홍보비는 전무함.

■ 목표

-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지원 중단

■ 방법

- 원자력 진흥법 폐지
- 원자력 문화재단 해체
- 재생가능에너지 재단 설립

■ 현황

- 2016년 11월, 197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이 공식 발효됨.
-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마련. 애초 목표 달성시기를 기존 2020년보다 10년 뒤로 후퇴시켜 기존 2020년 감축목표를 폐기한 것임.
- 한국은 지구적 기후변화 해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적 재원을 개발도상국 석탄 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해왔음. 2007~2014년 동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각각 38억 달러와 37억 달러임. 막대한 공적재원이 두산, 현대, 대우, 포스코, SK와 같은 대기업들이 석탄발전 수출로 이익을 확대하는 데 지원됐음.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로 추산됨.
-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1.1%로 OECD 국가(평균 9.2%) 중 최하위임(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 2012년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11%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으나 1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시점을 5년 뒤로 미룬 계획임.

■ 목표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명시, 탄소 저감 정책 추진
- OECD 평균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 방법

- 당진 에코파워, 삼척 포스파워 등 신규석탄발전설비 9기 취소
-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부과, 화석연료 보조금 점차 삭감
- 산업은행,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지분투자 철회
- 에너지 전환 비용 전기요금 표시제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2030년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30% 명시

(3) 생활안전

1. GMO 상용화 중단
 - » gmo 상용화 추진중단, gmo식품 완전 표시제 실시
2. 미세먼지 없는 하늘
 - » 저탄소협력금제 시행,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 취소, 대중교통중심 인프라 확대

1 GMO 상용화 중단 및 완전표시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다국적기업의 GMO 유포와 확산은 토종자원의 생산 위축과 유전자 오염 등 직접적인 위해요소가 되고 있음
- ‘유전자원 접근 및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채택(2010.10.30)에서 확인되듯 생물자원은 환경 차원뿐만 아니라 권리와 이익의 대상으로 지위가 확대. 종자산업의 경제적 가치 향상
- GMO 확산을 차단하고 토종유전자원 보전이 절실

■ 목표

- 국내의 토종유전자원 보전 조치를 강화해 종자다양성 및 종자주권을 확보하고, GMO(LMO, 유전자변형종자·생물체)의 확산을 저지

■ 방법

- GMO상용화 추진중단,
- GMO(LMO) 씨앗의 유출 방지 및 관리 강화
- GMO의 비의도적인 유출에 대해서도 공급사에 유통 관리상 책임 엄격히 추궁
- 토종유전자원 적극 발굴·수집·보존·보급 제도화
- 토종종자 연구소 보급소 확대 운영 및 실질적 생산과 유통지원, 토종종자산업 지원
- 토종유전자원 국외 유출 철저 관리·감독. 위반 시 처벌 강화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강화·개정
- GMO 식품 완전 표시제

■ 현황

-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2005년부터 10년 단위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2000년대 들어 대기환경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을 통해 국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상당 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PM10(미세먼지)농도가 높은 수준이며 일평균 대기환경 기준을 넘는 고농도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고농도 미세먼지 주요 원인은 황사, 스모그 등 장거리 이동오염물질의 국내유입량 증가와 확산지연, 국내 산업시설과 차량 운행,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지 않고 있는 것 등임.
-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중 도로이동 오염원에 의한 배출은 52.5%이며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의 67%를 경유차가 배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 4위 석탄수입국이며 석탄발전소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음. 석탄발전량이 세계 1,2위인 중국과 미국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금지하고 있음. 미국은 2020년까지 27%가 줄어들 전망이며 중국은 베이징 등 세 지역에서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함.
-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기준은 국제수준(WHO에 못 미치고 있으며 대기측정망 또한 지역별 편차가 큼.

* 연평균 권고기준 WHO PM10 20 $\mu\text{g}/\text{m}^3$, PM2.5 10 $\mu\text{g}/\text{m}^3$, 한국 PM10 50 $\mu\text{g}/\text{m}^3$, PM2.5 25 $\mu\text{g}/\text{m}^3$

* 측정소 152개 중 82개소가 광역시에 설치. 서울 41.3개소, 경상북도 0.3개소, 강원도 0.4개소)

■ 목표

-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 대책 강화
- 대기환경 사회안전 시스템 구축
-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 방법

- 저탄소협력금제 전면 시행, 대형 경유버스의 친환경차 전환
-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 취소,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감시 및 배출량 규제 강화
- 전국적 대기오염측정망 시스템 구축
- 대중교통중심의 교통 인프라 확대,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 인프라 확대

(4) 피해자권리

Q 공약

1.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제조사 책임 강화
 - »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제조사 책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부터 사용이 본격화 돼 2011년 판매 금지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사망 1,122명을 포함 5,380명의 피해자가 신고되었음(2017. 1.13 현재). 2017년 1월 20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국회를 통과해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징벌적손해배상 조항이 도입되지 않은 한계가 있음.
- 신규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 등록하도록 한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2013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기업의 저항과 정부의 비협조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2016년 11월 정부는 7개 부처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으나 화학물질의 안전성 입증과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 내용이 빠져 있음.

■ 목표

- 생활용품 안전 관리 강화
- 화학물질 제조사 책임 강화

■ 방법

-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 화장품 등 흡입가능 생활용품에 방부보존제 및 살생물질에 대한 사용가능물질과 안전기준 제시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환경부로 일원화(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 제조사 책임 및 처벌 강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실효성 강화 : 적용대상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기업 확대

토론 4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의당]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정의당의 약속

심상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1.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 안전사회 첫걸음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임.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안전 현주소를 보여준 사건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무너진 국가를 바로세워야 함. 이를 위해 선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인력, 예산 보장 등 선체조사위법을 개정하고 실질적 조사 권한을 보장하는 2기 세월호 특조위 구성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함. 유가족과 협의해 선체의 영구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범국민416재단을 조성해 참사기록 보존, 피해자 심리치료와 생계지원, 안전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진행해야 함.
- 헌법 개정시 생명권과 안전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재난 발생시 국가로부터 구조 및 보호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 주거, 교통, 교육, 노동, 레저와 문화향유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안전사회전환기본법을 제정해야 함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해 전통적 안보와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음.
-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세월호 참사, 가슴기살균제 참사 등이 대표적 사례
-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

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함(「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 기업에 대한 처벌도 필요함. 프랑스의 경우 1992년 개정된 신형법에 의거 부당노동행위, 과실치사상, 부정회계, 환경범죄 등에 대해 기업처벌을 하고 있으며, 형벌은 벌금형 외에 해산명령, 직업활동 등 수행금지, 사법감시, 영업소 폐쇄, 공계약 배제, 기업자금 공모 금지, 수표발행 또는 신용카드 사용금지, 몰수, 판결의 게시나 공고 등 매우 다양한 제재가 규정되어 있음
- 무분별하게 완화된 안전 관련 규제는 다시 복원 또는 강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좋은 규제는 강화하고 나쁜 규제는 개혁하는 기관으로 개선해야 함. 생명·안전·사회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규제프리존법은 폐기해야 함.
- 생명·안전 관리자 확충분야 업무 외주화를 중단하고 특히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공공부문은 안전중심 경영과 인력확충이 중요.
- 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금지하고 정규직 직접 고용 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함. 또한 하청업체의 산재에 대한 원청과 발주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함
-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원전 보유국으로 원전 밀집도는 세계 2위, 세계 1·3·4·7위의 대규모 원전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으며, 원전 인근 인구도 세계 최고로 밀집되어 있음. 정의당은 신규원전 중단, 노후원전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를 ‘탈핵2040’ 실현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역원자력규제위원회 설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시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다중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
- 대중교통 안전운행 여건을 마련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함. 대중교통 안전사고에 따른 참사 원인제공자 사후적 처벌을 강화하고 화물·버스·택시 노동자의 충분한 임금과 휴식 시간 보장, 여객운수사업법에 버스 적정인력 명시 및 규제 강화 등이 필요.
- 화학물질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과 주민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통보방법과 대피매뉴얼 마련,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단계에서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등
- 「식품위생법」 상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의 범위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되었으나 하지만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

용유, 간장, 당류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GMO 성분 잔류와 상관없이 모든 식품 원재료 대상으로 GMO 완전표시제가 실시돼야 함.

- 가슴기 사건 등 기업의 잘못으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힘들고 사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도 어려움. 피해자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함.
- 대형재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 필요. 대형재난의 경우 국가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조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사위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함. 또한 피해당사자의 직간접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영국이 1989년 힐스보로 참사 이후 20년만인 2009년 ‘힐스보로독립패널’을 구성해 참사의 원인을 규명했던 사례 참조.

2. 영역별 안전과제와 심상정 후보의 약속

(1) 산업재해 안전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핵심적인 안전관리 업무조차 외주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음
- 우리나라 일터는 3시간마다 한 명이 죽고 5분마다 한 명이 다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최악의 산재사망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음
-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 새로운 형태의 산업재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약속]

-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위험업무 정규직화
-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강화 특별법」, 「기업살인법」 제정
-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전면 개편
- 모든 산재가 보상받도록 「산재보상보험법」 전면 개정
-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

(2) 공공교통 안전

-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강행, 2016년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 2017년 2월 ‘제3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확정하정고시 등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철도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 열차 감축, 노선의 폐선이나 운행의 감축, 안전사고 위험 증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음
- 192명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참사,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모두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유발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음

[약속]

- 철도의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
 -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 제3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철회
 - 민영화된 수서발 KTX 노선 코레일과 재통합
- 대중교통 안전운행 여건 마련과 규제 강화
 - 대중교통 안전사고에 따른 참사 원인제공자 사후적 처벌 강화
 - 화물·버스·택시 노동자의 충분한 임금과 휴식 시간 보장
 - 여객운수사업법에 버스 적정인력 명시 및 규제 강화
 - 안전인력 충원 가로막는 총액인건비제 공공기관부터 우선 폐지
 -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원천금지

(3) 생활안전 (GMO)

- 「식품위생법」 상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의 범위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되었음
- 하지만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또 표시의무자 범위에 식품접객업소가 추가되지 않았음
- 방사능 오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에 규제 조항이 없음
- 아질산나트륨 등 각종 식품첨가물이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용도에 따라 하

나의 첨가물만 표시해도 되는 일괄표시가 허용되고 있으며, 포장 크기가 작은 경우나 대형마트 등에서 만들어 파는 즉석식품인 경우 표시가 면제되고 있음

[약속]

- GMO 성분 잔류와 상관없이 모든 식품 원재료 대상으로 GMO 완전표시제 실시
- 「식품위생법」·「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방사능 오염 먹거리 규제
-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모든 식품첨가물에 대해 예외 없이 표시 의무화

(4) 탈핵 안전

-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원전 보유국으로 원전 밀집도는 세계 2위, 세계 1·3·4·7위의 대규모 원전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으며, 원전 인근 인구도 세계 최고로 밀집되어 있음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운전의 안전성·경제성·환경성·사회성 등 모든 측4면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원전 증설이 감소하고 있음
- 2016년 경주 지진으로 핵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경북 월성 4호기에서 새로 장착 중이던 핵연료 한 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비롯해 부산 고리 4호기 냉각재 누설로 인한 수동 정지, 고리 3호기 등의 철판 부식 등 원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
- 우리나라 원자력안전행정 체계는 중앙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으나 핵발전소나 핵연료시설 등 관련시설이 소재하거나 주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전무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공유와 참여경로도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약속]

- 「탈핵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을 통해 204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 에너지법제에 핵발전소의 점진적 축소원칙 반영
- 202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폐쇄, 건설 혹은 계획 중

인 원전 전면 백지화

-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역원자력규제위원회 설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시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다중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구축

(5) 화학사고 안전

- 구미 불산 누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충남 금산 불산 누출, 여수 GS칼텍스 송유관 파손, 삼성전자 수원공장 오페수로 인한 원천리천물고리 집단폐사 사건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음
- 주민들은 공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을뿐더러 사고 이후에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있음
-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주민은 물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 시청 공무원도 불산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음. 금산 누출 사고 때는 해당 업체가 사실을 은폐해 주민이 대피할 시기를 놓치기도 함

[약속]

- 화학물질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통보방법과 대피매뉴얼 마련
-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단계에서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6) 피해자 권리

-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기업들의 잘못과 불공정 행위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힘들고 사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도 어려움
-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간의 문제라며 피해구제를 방치하였으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시킴

[약속]

- 기업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효율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
-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구제(계약취소, 환불, 교환 등)를 명령하는 제도 도입(「소비자기본법」 개정)
-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위원회 보장, 국가책임에 따른 배·보상과 심리치유 등 피해자 지원 강화.

생명 · 안전사회 기본 원칙

우리사회는 위험사회이다. 사람의 생명을 돈보다 가볍게 여기는 사회, 생명의 안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위험이 점증하는 지금,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세월호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이다.

1. 생명 존중이 안전이다.

정부는 안전을 '영토안보'와 '재산권보호'로 간주한다.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은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전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며, 사회의 제도와 정책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전제로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다. 생명의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안전장치를 규제로 여기는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기업의 이윤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3. 위험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이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위험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집중된다.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조건 때문이다. 생명 안전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는 더 많이 보호되어야 하고, 제도적 자원이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4. 안전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 않다.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있다. 기업과 정부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이며, 안전에 노력을 다하지 않은 기업과 정부의 실질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5.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정부와 기업은 위험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일상적으로 위험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을 때 생명구조를 일순위로 하며, 재난관리 체계를 갖추고 일상적 훈련을 해야 한다.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6. 재난과 참사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재난과 참사 피해자는 참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알아야 하고, 권력의 책임이 큰 경우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통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충분하게 배상을 받고 치유받을 권리가 있다.

7. 생명·안전을 지키려면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주체는 시민과 노동자이다. 노동자와 시민은 위험에 대해 알 권리, 위험작업이나 환경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고, 기업과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권리, 안전을 위한 각 제도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8.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재난과 참사를 공동체의 과제로 인식하여 재난과 참사에 대해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피해의 회복은 공감과 연대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 사회 전체가 국가와 기업이 생명 안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위험사회 구조개혁

1. 지진위험 지역의 원전 중단(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 현재 한국에는 2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다. 우리는 전 세계 1위의 원전 밀집국가의 오명을 갖고 있다. 원전 확대하는 것은 사고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해결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미래로 떠넘기는 일이다. 또한 삼척과 영덕에서는 원전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투표결과 85%, 91.7%의 주민들이 원전 건설에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 현재 신규 원전을 건설, 계획하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 지역은 경주지진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지진발생 위험지대임이 밝혀졌다. 이미 경주에는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를 비롯한 나머지 원전들의 안전성,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고통 속의 인근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 위험사회에서 벗어나려면 지진위험지대에 건설 허가된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삼척, 영덕, 울진에 건설예정인 모든 원전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조속히 폐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2. 4대강 16개 보 수문 상시 개방 및 책임자 청문회

-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22조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해마다 4대강의 수질, 수생태계 부문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국무조정실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수질개선효과는커녕 녹조와 BOD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며, 강생태계를 훼손시키고 홍수 위험을 증폭시켰다.
-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 적용안’을 통해 인정했듯이 수질악화 해소와 녹조 저감을 위해서는 보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동시에 한꺼번에 개방해야 한다.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는 청문회도 실시되어야 한다.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을 통해 진상 규명, 구조물 안전성, 주민피해, 생태공원 유지관리,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의 검증을 제도화해야 한다.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복원) 위원회’를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전 국민의 우려 속에 실시된 4대강사업이니 만큼 보의 철거와 강 복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추진되어야 한다. ▲4대강사업이 끝나고도 이어지는 경인운하 연장 사업, 도수로 사업, 저수지 증고 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친수구역 개발사업, 영주댐 건설, 지리산댐 건설 등의 후속사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 위험 요인들에 대한 성역 없는 정보공개

- 구미 불산 누출사고, 가슴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한국사회는 ‘비밀은 위험하다’고 각성하였다. 기업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위험을 숨겨왔으며, 정부는 이를 방치해왔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위험을 바로잡는 출발은 국민이 알권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보가 성역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는 노동자와 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또한 미래의 재앙이 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정보 역시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져야 한다. 국민의 안전에 관련한 정보에 성역이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정보는 행동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민은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과 가족과 동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논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업과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대상에 대해 정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화학물질 등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는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고 알기 쉬운 형태로 가공되어 전달되어야 한다.

4.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의 금지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어떤 독성물질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많은 소비자들이 기침이 심해지고 피부가 이상해진다는 호소를 기업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그들은 안전을 의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압박질렀다. 결국 규모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말았다. 2013년에 정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제정하면서 마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려 한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완화하라고 명령하였다.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게 로비하여 화평법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검찰조사와 국회의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 국민은 더 이상 기업과 정부를 믿지 않는다. 국민은 요구한다. 독성을 확인하지 않은 성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살생물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물론 모든 산업용제품에 까지 이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노동자와 주민과 소비자 모두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

5.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원청 기업이 하도급을 주는 이유 중에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이 40%로 1위이다. 재벌 대기업은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 해서 산재예방, 보상, 처벌에서 빠져 나가고, 오히려 산재보험료 할인은 매년 수 백 억 원을 받고 있다. 주요 30개 기업의 산재 사망의 90%가 하청 노동자다. 매년 600여명이 사망하는 건설업, 한 해에 10명이 죽어나간 현대 중공업, 철도 지하철의 선로보수, 구의역의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 에어컨 설치기사 등 하청 노동자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화학산업 밀집 산업단지, 철도, 지하철, 병원, 원전, 한전에서 도 외주화를 남발해서 위험의 외주화는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구미불산 누출사고로 인근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고, 철도 지하철의 선로보수, 신호, 전기, 소방 화재 등 외주화가 남발되고 있어, 작은 사고부터 상왕십리역 추

돌사고처럼 대형사고까지 시민안전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 위험한 업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

-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하청 산재가 다발하고 있으나, 현재는 원청 책임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같은 사업장에서는 원청이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각종 안전보건규정도 직접 준수하고,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처벌도 받는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을 하도급 금액에서 보장하도록 하고, 하청 산재와 원청 산재를 합산하여 통계를 산출하도록 하는 등 원청 책임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6. 중대재해기업처벌 특별법 제정

- 이천 냉동창고 40명 노동자 산재사망에 기업이 받은 벌금은 2,000만원으로 노동자 1명의 사망에 벌금 50만 원꼴에 불과했다. 하청 노동자가 줄줄이 사망해도 원청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고, 가물에 콩 나듯 처벌이 있어도 하위직 관리자일 뿐 원청의 최고 책임자 처벌은 없다.
- 38명의 사망과 전 국민을 공포에 메르스 사태, 그러나 삼성이 받은 과징금은 800만원이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가슴기 살균제 참사에서 핵심 최고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구조의 현장지휘를 맡았던 해경 경장 외에 정부 책임자 처벌은 없으며, 청해진 해운도 온갖 법을 적용해서 형량만 늘리고, 기업 자체에 대한 책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과 공무원 최고 책임자의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한다.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제정되어 있는 기업 살인법이 한국에서도 제정되어야 한다.

7. 규제프리존법 등 안전규제완화법안 폐기

- 규제프리존법은 재벌이 분할 운영하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 공적 규제를 무력화하는 법이며, 전경련이 부당한 로비를 통해 입법화하려

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법안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재벌특혜법이다. 이법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 입증은 기업에 맡기고 있는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기업의 왜곡된 안전성 검증으로 인한 수천 명의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배상책임제도가 미흡한 상황을 고려하면 제2의 가슴기살균제 참사를 불러오는 것이다. 또한 학교 앞 호텔허용 등 기업 특혜성 사업, 국유자산의 장기임대와 수익매각을 전제로 한 보호지역의 막개발 허용하는 산악 및 해안관광 개발 등의 우려도 매우 높다.

- 규제프리존법은 공청회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특혜·환경파괴·국민안전위협하는 규제프리존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8.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입법

- 기업의 이윤논리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며, 정부의 안전규제 완화로 노동자와 시민은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 강화는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은 기업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 피해자는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중대재해의 경우 원인제공자가 정부와 기업일 경우, 피해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관을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며, 모든 정보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 피해자는 충분히 존중받고 위로받을 권리가 있다. 언론은 원인과 재발방지에 대한 심층적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발언이나 상처를 주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위로, 그리고 희생자가 있을 경우 충분히 추모하며,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 중대재해로 피해를 당하거나, 희생자가 생기는 경우 어떤 배·보상으로든 그 회복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배·보상은 피해자가 온전하게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고, 공동체도 그 상처를 치유할 때까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절실하다.

9.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 철도 지하철 2인 승무 의무화

- 서울 지하철은 인구밀도 세계 216개 도시 중 20위의 대규모 도시이고, 하루 7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이다. 지하철은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기관사 1명이(1-4호선, 서울메트로만 2인 승무) 승객 수천 명을 책임지는 구조로 상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 역무인력의 최소화로 위험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로 192명의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지하철 기관사 10명이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대구참사도 2인 승무였다면 다른 대응이 가능했고 많은 승객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될 수 있었을 것이다.
- 지난해 발생한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도 2인 승무였다면 대응방식이 달라졌고,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계속되는 지하철 기관사 자살을 막기 위해 여러 대안과 연구를 통해 2인 승무 기준을 만들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대책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으로 지하철이 운행되기 위해서 지하철 2인승무제도가 법제화(철도안전법) 되어야 한다.

10.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현과 방사능·GMO 없는 안전급식

- GMO 상용화가 추진된 지 20년이 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용 GMO를 수입하는 주요 수입국이다. 현재 우울증, 자폐증, ADHD, 암 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GMO는 아이를 비롯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콩, 옥수수, 면화, 유채 등 대부분 식용 GMO는 식용유, 장류, 과당 등으로 제조되고 사료로 쓰이고 있다. 현행 불완전한 GMO 표시제로 인하여 GMO 원료로 만들었지만 가공이 후 DNA 또는 단백질이 발견되지 않으면 GMO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 GMO 원료 수입은 많은데 주변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GMO 원료기반에 의한 가공품의 GMO완전표시제 법개정이 시급하다. GMO 벼 등 시험재배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성장기 아이들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하여 학교급식에서 방사능과 GMO 식재료를 퇴출시켜 안전한 학교급식을 추진한다.

11. 미세먼지(PM 2.5)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3단계(연 평균 $15\mu\text{g}/\text{m}^3$)으로 강화

-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PM2.5)가 $10\mu\text{g}/\text{m}^3$ 상승할 때 사망률이 0.9% 증가한다고 밝혔다. 호흡기질환이나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각각 1.3%, 1.1%이나 증가했다. 세계질병부담(GBD)은 미세먼지(PM2.5) 때문에 2010년 한 해 세계적으로 320만 명이 조기 사망했다는 결과도 발표했다. 미세먼지의 위해성은 WHO가 2013년 미세먼지(PM2.5)를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심폐질환과 폐암에 의한 사망률 증가를 최저수준으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권고기준을 $10\mu\text{g}/\text{m}^3$ (PM2.5) 정하고, 기준달성을 위한 3단계 잠정목표($35, 25, 15\mu\text{g}/\text{m}^3$)를 제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2단계 수준($25\mu\text{g}/\text{m}^3$)에 머물러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10\mu\text{g}/\text{m}^3$)에 2.5배 이상 느슨하고, 미국과 일본의 $15\mu\text{g}/\text{m}^3$, 호주 $8\mu\text{g}/\text{m}^3$ 등 주요 국가의 환경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수준까지 낮출 경우, 조기사망자가 7,852명 감소하는 등 연간 약 3.3조원의 건강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변경된 환경기준 달성을 목표로 지역별, 발생원별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10\mu\text{g}/\text{m}^3$ 를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우선 현 $25\mu\text{g}/\text{m}^3$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3단계 $15\mu\text{g}/\text{m}^3$ 으로 강화해야 한다. 미세먼지(PM2.5)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하고, 적극적인 차량 수요관리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12. 인간 동물 자연에 고도의 위험을 부과하는 공장식 축산정책 폐지

- 동물의 건강과 인간의 건강은 상호 의존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과 생태계의 상호 연관성을 부정한 채 동물을 오직 생산기계로 간주하여 철저히 본성을 억압하고 감금 착취하는 동물학대적 생산 방식인 공장식축산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의 닭과 돼지의 99%는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사육된다.
- 공장식 축산은 항생제 상시 사용, 유전적 다양성 상실, 과밀과 비위생으로 대규모 인수 공통 전염병은 물론 항생제 내성 등 인류가 예측하고 관리 제어할 수 없는 실질적이고 가공할 위험을 부과한다. 이제 토착화된 조류독감은 이번 단 한번에 4천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 매물로 몰아갔다. 이에 더하여 구제역까지 발생한 이 대 재앙은 근본적으로 항생제와 동물에 대한 학대, 자본 독점에 의지해 불안하게 유지되는 잘못된 시스템 ‘공장식 축산’에 내재되어 있다.
- 따라서 그 파국적 결과의 일부인 살처분이나 방역 방법의 개선으로는 인간과 동물을 대재앙의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없다. 모든 생명체가 공장식 축산이 부과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은 공장식축산이 폐기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책적 지원이 공장식 축산이라는 괴물을 키운 만큼 이제 모든 생명을 아울러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프레임이 변경되어야 하며 공장식 축산 정책 폐기를 위한 절차와 방법이 시급히 논의 되어야 한다.

위험사회에서 생명안전이
중요되기
일터와 사회
보